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 동안 특수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권이나 권리수준이 매우 미약했으며, 특히 청소년 집단의 권리는 이들을 인격과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열악한 위치에 처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신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 청소년의 권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관심 대두, 인권신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 확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으면서 특히,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청소년의 주체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국가적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존 듀이는 민주주의를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고 사회질서는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찾는 것이 습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남이 찾아주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권리가 무시되었고,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 들어 청소년권리에 관심을 갖는 성인들과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

주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선진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받고 누리는 경험을 가져야 하며,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 습관과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자신의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자유는 다양한 대안이 주어지고 그 대안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결정 없이 성인들이 정해준 틀 속에서 행동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에서 조차 자유 없는 생활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통제 위주의 가정 환경,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약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회풍토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강자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제 한 나라의 권리보장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인권이나 권리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권,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을 신장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청소년 인권과 권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함으로써 세계적인 동향에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청소년 권리보장에 있어서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1999년 새로 개정된 교육법에도 상당한 부분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들도 자신

의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권리 신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참정권, 자유권, 보호권, 복지권 등으로 구분하여 그 속성과 범주를 고찰하고, 청소년권리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청소년권리 일반으로 영역화 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권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참여권, 자유권, 보호권, 복지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권리의 속성과 범주를 살펴보고,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실태를 파악·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권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청소년들이 향유·행사하는 권리의 속성과 범주,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생활현장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권리는 제약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실제로 향유하는 권리에 대한 속성과 범주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청소년 권리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로 영역화 하여 조사한다.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는 신체·언어적 학대, 의사존중 여부, 그리고 복지권·자유권·보호권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를 살펴본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는 신체·언어적 학대, 성별·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감정, 의사 등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적 인격체로서의 존중받

을 권리 등에 대한 자유권,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청소년이 원치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등과 같은 보호권,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및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복지권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는 권리에 대한 교육경험 및 관련 홍보물의 접촉 여부, ‘세계인권선언’,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의견표명권’ 등의 지식 숙지여부 등을 알아본다. 또한 사회약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편파적·부정적인 대중매체의 보도, 근로청소년들의 노동력 착취, 여성의 권리,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과 같은 자유권, 각종의 부당한 대우 및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보호권, 다양한 사회적 유익환경 및 권리를 향유할 복지권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각 권리신장 방안을 예시한 후 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평가하게 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청소년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 관련 규정의 제정·정비, 교사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청소년권리를 보호·신장하기 위한 각종 기구의 구성, 청소년들의 참여를 인정·보장·유도하기 위한 방안, 민간단체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권리에 관한 지속적·체계적 연구 수행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경인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1개교와 고등학교 1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1,255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212부였는데, 이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58부를 제외한 1,18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자유권, 보호권, 복지권을 분석단위로 설정한 일반적인 청소년권리의 존중도,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권리신장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성, 교급(중·고), 학교계열(인문·실업), 지역(대도시 및 이외 지역)의 네 가지이다.

조사 내용은 총 157문항으로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신체·언어적 학대를 묻는 5문항, 청소년의 의사존중 여부를 묻는 5문항, 복지권을 묻는 5문항 등 총 15개 문항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신체·언어적 학대를 묻는 5문항, 학교에서의 차별 여부를 묻는 3문항, 의사존중을 묻는 4문항, 복지권을 묻는 4문항 등 총 16문항이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선거권을 묻는 1문항, 권리에 관한 지식을 묻는 8문항, 사회약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묻는 9문항, 권리 주장성을 묻는 5문항 등 총 23문항이다.

일반적인 청소년권리 존중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자유권 관련 8문항, 보호권 관련 8문항, 복지권 관련 9문항 등 총 25문항이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권리신장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가정 4문항, 학교 11문항, 사회 12문항 등 총 28문항이다.

<표 1-1> 설문영역 및 내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신체적 언어적 학대	5-2 내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
		5-3 가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5-5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5-6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5-10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의사존중 부	5-1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5-7 내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5-9 내 부모는 평소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5-13 집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5-14 내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복지	5-4 내 부모는 나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
		5-8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5-11 내 부모는 나를 잘 돌봐주신다
		5-12 내 부모는 내가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5-15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학교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	6-1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6-3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6-7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6-8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6-13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학교에서의 차별	6-4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6-5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6-6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의사존중	6-9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6-11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6-15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6-16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학교에서의 청소년복지	6-2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6-10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6-12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6-14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 에서의 권리	선거권	7 선거권은 몇세부터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에 관한 지식	8-1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8-2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
		9-1 나는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설문영역		설 문 문 항
사회에서의 권리	권리에 관한 지식	9-2 나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9-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알고 있다
		9-8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사회약권에 대한 인식	9-13 나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3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이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8-4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8-5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8-6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8-7 우리나라 법정에는 가난한자나 부자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8-8 여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
		9-4 청소년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9-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9-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권리장성	8-9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9-7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9-9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9-11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9-12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청소년권리증정제도	자유권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서의 의사결정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보호권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설문영역		설 문 문 함
청소년권리준중도	복지권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을 권리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11-18 또래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권리 열악원인	10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신장방안	가정	12-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
		12-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12-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12-25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12-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
	학 교	12-1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12-2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12-3 학급당 인원 감축
		12-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12-5 교칙 및 규칙을 완화
		12-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12-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12-8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12-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12-10 인성교육의 확대
		12-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
		12-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
	사 회	12-13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
		12-14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
		12-1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프로그램 제작 보급
		12-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
		12-17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12-18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 만들기
		12-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
		12-20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
		12-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분포는 남자 52.5% 여자 47.4%로 남자가 약간 많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 49.9% 고등학생 50.1%로 비례를 이루고 있고, 계열은 인문고가 57.7% 실업고가 42.7%로 모집단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55.1% 대도시 외 지역이 43.6%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인	사 례 수	비 율 (%)	유효비율 (%)	축적비율 (%)
성 별	남 자	638	52.6	52.6
	여 자	575	47.4	100.0
	소 계	1213	100.0	
교 급	중학교	605	49.9	49.9
	고등학교	608	50.1	100.0
	소 계	1213	100.0	
계 열	인문고	351	28.9	57.7
	실업고	257	21.2	100.0
	소 계	608	50.1	100.0
지 역	대도시	668	55.1	56.4
	대도시 외	516	42.5	100.0
	소 계	1184	97.6	100.0

II. 청소년 권리의 이론적 배경

1. 권리의 속성과 범주
2. 청소년 권리의 유형과 특성
3. 청소년 생활영역의 권리와 제한

II. 청소년 권리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청소년들이 향유·행사하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생활현장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권리는 제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권리의 속성과 범주

1) 권리와 인권

청소년의 권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권리’의 속성과 범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권’은 사실 다의적으로 쓰이는 애매한 말로,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청소년의 권리’는 동의어로 볼 수 있다. 둘째, ‘인권’이라는 말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라는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넷째, 최근 들어 동물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모종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동물권’(animal rights)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권리’는 ‘인권’의 저항적 의미도 없고,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상의 어법과 의미로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제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인권’보다는 ‘청소년권리’라는 제목 아래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우선 권리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존엄성의 사상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그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증심

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된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각 국의 헌법을 포함하여 실정법이나 각종 문헌에 나타난 모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가치 판단의 원천이 되지만, 법적 차원에서 보면 초국가적 자연법 원리 사상의 밑바탕이 된다. 자연법 사상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초국가성, 절대성, 불가침성, 불가양도성의 항구적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존엄성은 근본적 가치규범으로서 모든 윤리적 판단과 법령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근본원리를 제공한다.

인간존엄성에 바탕을 둔 인권은 인권사상의 발전에 따라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사회·경제적 권리(socio-economic rights) 등으로 발전된다. 여기서 인권이 시민권 또는 정치적 권리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정법에 규정된 제 권리가 인권의 포괄적 절대성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로 일상 생활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상충되는 경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향유·행사하는 권리를 범주화하는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 향유·행사하는 권리는 적극성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고, 권리의 내용에 따라 시민·정치권, 사회·경제권, 문화권 등으로 구분되며, 또한 행사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생존권, 자유권, 복지권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자면, 같은 경제권이라 하더라도 경제행위의 선택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의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는 성격상 자유권에 속하므로 경제적 자유권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복지재(welfare provision)로 수혜 할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는 복지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권리의 속성

역사적으로 볼 때 ‘권리’의 속성은 근대 자연법적 정치 사상에 비추어 정립되었다. 우선 존 로크(John Locke)를 중심으로 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이 일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권리의 속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엄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러한 인간 존엄의 사상은 로크의 윤리학 및 정치사상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대 정치사상의 어느 쪽에 비추어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명제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 개념은 오늘날 흔히 인식되고 있듯이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권리인식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단초가 된다. 즉 인간존엄성에 대한 권리의 수혜·행사는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은 그 개념 자체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시사해 주는 실행성(practicability)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에 기인하면서 실행성을 지닌 인권의 속성은 무엇인가? 어떤 논리적 속성에 비추어 모든 인간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인권의 논리적 속성은 우선 천부성(entitlement)과 보편성(universality)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속성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연소한 청소년의 권리가 실제적인 권리임을 정당화시키는 속성이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rights-holder)가 힘(power)을 소유한 자, 청구행위(claim-action)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정당화 근거가 된다(김정래, 1998a; 1998b).

다음으로 우리가 청소년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이란 예외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반

성'(generality)과는 달리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의 진술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편성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권리의 진술이 특정인간의 계약 또는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권리의 문제인 경우이다. 이를 특정권(special rights)이라 하는데, 많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 문제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 문제와 무관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노-사 간의 계약관계에서 야기되는 권리 문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권리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 두가지 권리의 속성은 청소년이 권리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권리 주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당화 근거가 된다.

권리의 속성인 '천부성'과 '보편성'이 실제로 보장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실제적인 속성은 '불가분성'(indivisibility), '불가양도성'(inalienability), '불가침성'(inviolability)이다. 불가분성은 권리를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의미이며, 불가양도성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침성은 권리의 소극적 측면, 즉 타인에 의하여 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 속성은 '천부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편성은 연령적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 문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이다. 즉 보편성은 청소년에게 불가분성, 불가양도성, 불가침성과 같은 실제적인 속성을 성인과 똑같이 부여해 주는 논리적인 속성이다.

이상의 속성에 비추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개인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지닐 때 그 개인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가분성, 불가양도성, 불가침성은 청소년이 접하는 실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향유하게 하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3) 권리의 범주

(1) 일반권과 특정권

일반권(general rights)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반면, 특정권(special rights)은 특정한 개인과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김정래, 1998a: 11-2). 일반권이 주로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보편적 권리라고 한다면, 특정권은 특정한 관계가 성립·유지되어야 권리관계가 발생한다. 특정권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의사와 환자, 아내와 남편, 교사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이다. 이들이 계약과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정권이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특정권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권리이다.

청소년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 일반권은 청소년이 향유·행사하는 권리의 대부분과 관련되는 반면, 특정권의 문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야기된다. 학생-교사의 관계는 학교교육상황 속의 교수-학습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성립한다. 이때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사는 청소년에게 특정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종의 힘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흔히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상관관계(correlatives)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교사는 '교육할(시킬)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¹⁾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보고, 교사의 '교육할(시킬) 권리'를 '교육권'이라고 규정하고, 이 양자가 채권-채무와 같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사의 교육할(시킬) 권리의 짝으로 보면,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할(시킬) 권리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가

1) 이 견해는 김철수(1993), 김신일(1995; 1998), 강인수(1998) 등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권리인 복지권(welfare rights)에 속하는 권리이다. 셋째, ‘권리’의 본질, 즉 ‘수혜 받을 수 있음’(entitlement)을 고려하면, ‘○○의 권리’는 ‘○○을 할(시킬) 권리’가 아니라 ‘○○을 받을 권리’를 지칭한다. 예컨대, ‘보호권’(rights of protection)은 ‘보호받을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지 ‘보호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은 보호하는 사람의 의무나 책무 또는 직무상의 권한 일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교육할(시킬) 권리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사-청소년간에 발생하는 특정권은 어느 것이 있는가? 우선 교사가 갖는 특정권이란 보편적 권리로써 청소년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격에 따른 교과를 가르치고 청소년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서 발생하는 ‘권한’(power)²⁾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교사가 생물교사라면, 그 교사는 생물교과를 지도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담당교과에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교사의 특정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갖는 특정권은 교육받을 권리에서 부수되는 문제로서, 교육받을 권리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교사, 교장, 학교당국 등)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실정권과 도덕권

실정권(positive rights)과 도덕권(moral rights)의 구분은 권리의 근거가 실정법에 보장되어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실정법에 특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실정권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덕권에 속한다. 이 구분은 우리의 법리학에서 보면 용어가 다소 생소한 면모가 있다. ‘실정권’이라는 용어는 철학에서 언급되는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가 경험 가능한 증거나 검증 가능한 명제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

2) ‘권리’와 ‘권한’과의 구분은 Hobfeld(1919)를 참조. 그리고 교사의 가르칠 ‘권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정래(1998b) 참조.

리의 범주가 실정법(명문법)에 명기된 것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채용된 말이다. 이에 반하여 ‘도덕권’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통용되는 규범에 관련된 상식인 ‘범 이전에 도덕’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시하는 규범 가운데 법과 도덕은 우리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규제하는 대표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을 견주어 보면 법이 도덕에 비하여 타율적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덕은 법에 비하여 자율적 강제력은 갖지 않지만 법보다는 더 근원적인 규범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도덕의 자율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법 이전의 보다 보편적인 규범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도덕권’은 비록 실정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정권’ 이전의 권리로 이해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정권은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권리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권리이다. 법실증주의는 권리가 실정법에 보장되어 있을 때만이 권리로서 면모를 갖는다고 보는 법리학설이다. 그러나 이 학설에는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정권은 특히 제3세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 많은 빈국들은 자국민의 최저 생계도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실정법에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권리가 실정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교육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이들의 권리는 도덕권으로 보장된다. 실정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한계는 우리의 헌법사에서도 입증된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는 제5공화국의 헌법에 이르러서야 실정법에 보장된 권리(실정권)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판례 등을 보면, 헌법 등의 실정법에 보장되지 않은 권리(이를테면 일조권)가 보장된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실정법이 오히려 도덕권을 보장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이 그 예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문화되지 않은 도덕권을 포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즉 최고 실정법 규범인 헌법이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 않은 도덕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범주 구분 방식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주로 관계법령이나 규칙 등을 통하여 야기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 권리의 문제를 실정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동시에 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법 이전에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명문화된 규범을 통하여 권리를 논의하는 데에는 권리의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속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의 생활과 행위를 규율하는 제 규정은 과연 청소년들이 청소년 신분에서 연유되는 제약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소년이 실제생활에서 당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로서 체벌, 두발·복장의 자유, 교과선택권 등의 제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3) 고전적 권리

고전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 의식이 싹트면서 성립된 권리들로서 주로 시민계급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권리를 지칭한다. 그러나 고전적 권리는 현대적 권리에 비하여 특히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다음은 고전적 권리를 구성하는 권리를 설명한 것이다.

① 자유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등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여 인신 구속 등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과 거주 이전, 주거, 언론, 집회, 사상, 양심, 종교, 학문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고전적 권리로서 자유권은 그 적극성

여부로 보면 주로 소극적 자유권에 해당된다.

② 평등권: 평등권은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하여 성별, 신체적 조건, 사회적 지위, 재산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선거권이 여기에 속하지만 보통선거가 인류 최초로 실현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③ 재산권: 시민계급의 형성과 맞물려 제기된 권리로서 사유재산의 보호를 골자로 하여 부당하게 징세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④ 생존권: 17-8세기에 형성된 신흥 시민 계급이 요구한 생존에 관한 권리로서 신체의 생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다.

이상에 언급한 고전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자연법 사상의 발흥 및 시민계급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시민계급 형성과정에서 주로 신흥자본가들이 강조하고 실제로 그들만이 주로 향유했던 고전적 권리는 한편으로 ‘부르조와 권리’(bourgeois rights)라는 비난을 받는다. ‘부르조와 권리’는 자본을 형성한 특정한 계층, 즉 ‘가진 자’ 들만의 권리라는 의미로서 ‘못 가진 자’와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는 권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난은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권리의 ‘보편성’과 ‘천부성’을 강조한 현대적 권리를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권리가 갖는 의의는 인신 구속의 적법한 절차, 재산권의 보호, 생존·자유·행복추구 등의 천부적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인권 의식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고전적 권리는 인류 권리인식의 뿌리를 내리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발전된 현대적 권리에 의하여 인권의 형태가 완성해 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4) 현대적 권리

현대적 권리는 고전적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이며, 복지권이 대표적인 현대적 권리이다. 이 범주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지만, 복지권이 권리로서 제 면모를 드러낸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고전적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권리는 수 많은 국제 권리문서, 특히 국제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서명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적 권리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는 고전적 권리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요구되는 모든 권리들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현대적 권리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전제가 되는 권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적극적 자유권: 적극적 자유권이 반드시 현대적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적극적 자유권은 고전적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현대적 권리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적극적 자유권(특히 참여권)이 여러 가지 형태의 현대적 권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요구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 의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권리의 주체로서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모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일체의 일(행사, 단체가입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권이 현대적 권리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참여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사람이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즉 복지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청소년의 선택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② 복지권(welfare rights): 복지권은 인간이 신체적·물리적·심리적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정당화되는 권리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복지권이 사회주의 정치이념이나 사회주의 정강정책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질병, 무지, 기아 등은 인간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결핍의 상태(a state of deficit)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당위성은 앞서 언급한 권리의 전제인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복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수혜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복지권에 대한 반론은 주로 범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다. 그들에 따르면, 권리는 무엇보다도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이 있어야 권리의 모습을 갖추는데, 복지권은 그 실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말리아와 같은 빈민국이나 전시상태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권은 실정법의 명문화는 물론이고,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복지권이 현대적 권리의 요체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여유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간·계층간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아이들이 결핍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³⁾. 둘째, 개인의 독립성과 개체성을 강조한 고전적 권리 인식만으로는 특정한 계층의 인간을 상기한 결핍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

3) 세계적인 NGO 중의 하나인 'Save the Children'(1997)의 보고에 따르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매일 35,000명이며, 개발도상국의 3명 중 1명의 아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1980년대 10년동안 150만명의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이 사망하였으며, 전쟁부상아동은 400만명, 전쟁으로 난민이 된 아동은 약 500만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비단 아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1997년 현재 약 12억의 인구가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라, 개인의 개체성을 보장하는 합리성조차 길러줄 수 없다는 시각(Wringe, 1981)이 대두되었다. 셋째, 현대적 권리의 요체로서 복지권이 강조된 데에는 복지권의 수혜자들이 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약자인 여성·아동·소수민족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또는 성장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결핍의 상태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권리의 보편성'을 언급하거나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③ 교육받을 권리(the right to education):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은 일차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몇몇 중요한 국제권리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기초교육(basic education)의 무상의무교육(free compulsory education)을 의미한다. 이 때 교육권은 다른 복지권과는 달리 누구나 예외 없이 수혜받아야 할 보편적인 복지권임을 뜻한다. 즉 질병이나 기아 등의 특정한 필요(special needs)로부터 도출되는 복지재(welfare provisions)를 수혜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청구할 수 있는 복지권과는 달리,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권리를 가리킨다.

'교육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는 '학습권'(the right to learn)이다. 학습권에 대한 논쟁은 유네스코에 의하여 채택·선포된 세계 성인교육대회선언(1985; 1997)에서 주장된 학습권의 대두로 인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④ 제3세대 권리: 제3세대 권리는 권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정에서 파악되는 권리 개념이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인식은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였는데, 제1세대 권리는 자유권(특히 소극적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과 같이 근대시민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를 지칭하고, 제2세대의 권리는 복지권과 같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요구되는 권리(사회·경제권)를 말한다. 제1세대, 제2세대의 권리가 개인의 청구 등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제3세대 권리는 평화, 환경, 노동 단

결과 같이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를 지칭한다. 이 권리는 권리의 수혜자인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리의 행사와 실현을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권리이다. 이는 청소년 수련 시설 활동 등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소년 권리의 유형과 특성

1) 청소년 권리의 유형

인간이 보편적으로 향유하고 행사하는 권리가 다양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유형도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이 누리는 권리의 두 가지 속성, 즉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편성(universality)⁴⁾이란 권리의 속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보편성 논쟁은 대부분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entitlement)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 언급되는 특수성이란 청소년만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향유하는 권리의 특수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를테면, 집안 여건이 넉넉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무료급식 문제, 특수 아동에 대한 특

4) '보편성'이란 '일반성'(generality)에 대비되는 말로서, 일체의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성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권리의 보편적인 속성을 곧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청소년이 연령적·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무능 등의 제한 이전에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별한 관심과 지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등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는 앞서 소개한 범주와 같은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유권(적극적, 소극적), 평등권, 생명권, 복지권, 참여권, 교육권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소극적 자유권, 적극적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보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당면하는 실제 생활에서의 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의 소극적 자유권

일차적으로 소극적 자유권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극적 자유권이 모든 권리의 향유와 행사의 초석이 된다는 점이다. 한 인간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일을 하는 제 조건이 타인으로부터 방해받는다면, 그는 그 일을 해보기도 전에(즉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 침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소극적 자유권과 관련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의 소극적 자유권 문제는 동료 청소년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 주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 체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폭력의 문제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일체의 폭력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가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이른바 '왕따')의 문제이다. 왕따 문제는 여타의 청소년 폭력 문제에 못지 않게 심각한 청소년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물론 소극적 자유권 침해 문제는 학교 상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방임과 학대는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유아기 때부터 일어나며, 성폭력의 경우도 많은 경우 학교 밖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적 상황

을 벗어난 침해 사례는 많다. 이를테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유권, 생존권 및 복지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적극적 자유권

청소년의 소극적 자유권이 보호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권은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란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요구되는 일체의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영위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획할 권리 등을 총칭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행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적극적 자유권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선택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하여 우선 학문의 자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란 특정한 제약을 받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학문탐구활동이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협의로 보면 연구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연구의 성과를 발표할 자유, 이를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대학생에게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비교적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간주될 수 있지만, 초·중등학생의 경우에 학문의 자유는 공통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학교권위의 통제로 인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학습거부권, 의무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참여권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 및 양심·신념·지식·경험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서는 특정한 표현의 수단에 국한

되지 않는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의 기본적인 자유를 포함하여 신체와 용모, 그리고 복장에 관한 자유까지 쟁점이 된다.

청소년의 권리 중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청소년이 갖는 중요한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행사는 청소년들의 재학 기간동안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상황에서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는 성인의 그것과는 달리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제한의 이유는 대개 ‘음성씨클의 조직’, ‘교육목적 외의 간행물 출간’ 등에서 찾아진다.

(3) 청소년의 평등권

청소년이 향유·행사하는 평등권은 헌법이나 기타 권리문서에 보장된 범주와 마찬가지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평등권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상의 기회에 접근할 권리, 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업부진으로 인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4) 청소년의 복지권

우선 ‘복지’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한, 복지권은 이러한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권은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의 문제, 결식 아동의 문제,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 보편적인 권리로서 무상의무교육의 형태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의 문제는 일견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교육적 문제에 귀결된다. 굶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굶으면서 노동현장에 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식 아동의 문제도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의 문제와 본질상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의 문제와는 달리 학교상황에서, 그리고 교육제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적어도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을 포함한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의 급식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와는 달리,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가 생활력을 잃고 병환 중에 있는 가정의 맏 자녀가 자신의 동생들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청소년의 연령이나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견디어가기 매우 힘든 생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목표로 볼 때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이상의 복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복지권에 해당한다.

2) 청소년의 참여권과 선택권

청소년의 연령과 특성상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참여권과 선택권이다. 왜냐하면 발달상 청소년은 자기주장을 비교적 뚜렷하게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선택권은 일견상 자유권이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행복추구권과 관련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의 요체는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에 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표현한 다른 이름이 바로 참여권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참여권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참여권은 정치적 참여의 권리에서 그 고전적인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권이 정치적인 참정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 제한의 근거로 대표적인 것이 능력준거(capacity criterion)이다(김정래, 1998c; 1999a). 한 마디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는 유보되거나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참여권의 제한이다. 그러나 참여권을 정치적인 참여(예컨대 선거권)로 좁게 보는 것은 '권리'의 본질적인 속성과 참여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헌법 및 국제권리 문서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여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주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권은 그 속성상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 참여권의 정당화 논의는 여타의 권리에 관한 정당화 논의보다 논리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Wringe는 참여권의 의미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rights to equality of influence)로 보고 있다(Wringe, 1981: 57ff).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참여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대의 제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은 원리상 보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과 박탈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실정법상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이다. 이들에 대한 참여권의 제한과 박탈은 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가해진다. 두 번째 기준이 바로 능력의 부족 또는 미숙이라는 능력 준거(capacity criterion)에 따라 참여권을 제한하는데, 그 적용대상이 주로 청소년을 구성하는 아동과 청소년이다. 영·유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에게 과연 참여권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김정래, 1998c: 61-71).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이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능력이 전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치매에 걸린 노파와 미성년자인 16세의 소녀 중 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더욱 고양하기 위해서 참여활동과 참여권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Wringle(1981: 62-3)는 참여권 보장 방안의 하나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와 대표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권리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자문을 하고 자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보 매체에의 용이한 접근권,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참여권의 효과 즉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참여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이나 의무교육과 같은 재화를 한 기관(또는 기업)이 독점할 경우 참여권이 제

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그것은 국가나 교육당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의무교육 문제에 관한 참여권은 제한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경우 요구되는 것이 운영상의 민주화(democratisation)이다.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것이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를 보장한 제도는 아니지만,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교육관계자(학부모, 교사, 지역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참여권을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로 파악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참여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참여의 기회나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여가 박탈된 상황은 바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화두인 '힘의 분산'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참여권이 행복추구권 보장의 열쇠임을 확인하는 단초가 된다.

3) 청소년의 참여권과 복지권

복지권이 결핍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자유권 중 참여권은 청소년의 삶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가지 청소년의 권리간에 나타나는 상충의 문제이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경우 대두되는 문제는 '양육'(nurturance)과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간의 대립 문제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논

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권리 문제로서 ‘양육’과 ‘자기결정’이 대립되는 것은 청소년의 ‘진정한 이익’(real interests)이 어떻게 보장되고 실제로 어떻게 증진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은 연령 등의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논의의 깊이를 떠나서 아동은 일단 경제적 힘(economic power)이 성인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청소년은 능력 면에서 성인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은 양육을 중심으로 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권리 인식의 세 가지 발전 단계의 측면(provision - protection - participation)에서 보면, 청소년의 인권이 온전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과 같은 ‘참여’가 보장되어 있을 때이다. 이 경우 문제는 자기 결정을 할 만큼 청소년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자의 대립 구도를 권리의 속성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양육’과 ‘자기결정’은 권리의 속성과 범주로 볼 때 각기 복지권(welfare rights)과 자유권(liberty rights)에 속한다. 복지권은 권리의 고전적 형태에서 설명될 수 없는 현대적 권리에 해당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복지권이 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당화를 위한 논의가 마련되었던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당시 아동의 복지권은 일종의 자선 형태로 주장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법실증주의자(legal positivist)들은 복지권이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권은 ‘필요’(needs)의 개념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필요’는 ‘결핍’(deficit)의 문제에 의하여 제기된다(김정래, 1998a). 그러니까 복지권은 결핍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같은 자유권은 고전적 의미의 소극적인 자유권과 달리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 자유권을 지칭한다. 권리 주체로서의 한 개인이 온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권이 보장되었을 때를 지칭한다. 즉 자기결정권과 같은 적극적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권리 주체자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청소년이 권리 주체라면, 청소년은 자기결정권과 같은 적극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아동의 자기 결정권이 주장되는 근거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을 행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온전하게 권리 주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대립된 입장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참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우선 ‘양육’과 같은 복지권의 입장은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이 결핍의 상태에 처해 있고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권리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실제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관련자들이 양육과 복지의 문제를 아동권리의 문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청소년 권리의 복지권적인 측면은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왜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인간의 적극적 자유권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자유의사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prerequisite)이 되기 때문이다(Wringe, 1981: 제7장 및 제14장). 즉 복지권의 행사는 궁극적으로 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다른 종류의 권리에 앞서 적극적 자유권이 주장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청소년의 권리가 기본적인 삶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복지권의 행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청소년을 권리

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을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결혼한 여성의 권리가 금슬 좋은 부부생활과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만으로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보는 오류와 마찬가지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는 전업 주부의 권리는 남편이 제공하는 경제적 수입(그것이 매우 풍족한 수준의 것이라 할지라도)과 원만한 부부생활만으로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아내로서의 권리인 ‘특정권’(special rights)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참여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권리 주체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연령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 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같은 적극적 자유권을 포함하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이러한 권리가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모색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생활영역의 권리와 제한

1) 청소년 생활영역의 권리

(1)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가정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최소 사회이다. 그만큼 청소년이 안정감과 함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기관이다. 그러나 가정은 학대와 방임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학대와 방임이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이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주로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대리인이기 때문에 친권의 한계와 학대, 방임과 같은 폭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벌, 폭력 등이 적극적 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 행위라면, 방임은 소극적 행위, 즉 보호나 감독 등을 결여하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야기되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방임의 형태는 신체적 방임, 식생활방임, 의생활방임, 주생활방임, 의료적 방임, 성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최운진, 1998: 55-57)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방임을 소극적 자유권의 침해로 보는 이유는 방임의 결과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현재 및 미래의 삶에 하고자 하는 바(적극적 자유권)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위해하기 때문이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특히 중등학생의 신분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타 영역에서의 권리보다 그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다.

학교는 여러 교과나 여타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과 교육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켜간다. 그러나 학교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인권의 침해를 체벌과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체 벌

체벌 문제만큼 교육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선 체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교육적 필요'에 의하여 가해지는 '교육적 조치'이다. 유교적 한국 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사랑의 매'라는 교육적 수

단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준다. ‘교편’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교육자의 훈육에 동원되는 ‘회초리’와 ‘메’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자리잡는다. 체벌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하여 체벌은 가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통제수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벌은 각급 학교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교육적 효과와 청소년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원칙상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으로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은 행정당국에 의하여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사회통념상 합당하다’는 전제일 것이다. 특히 이 전제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으로서 체벌이 정당화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뒤에 살펴볼 ‘청소년 인권 침해’ 부분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체벌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사회통념상의 합당함’에 의하여 과연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에 앞서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체벌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체벌의 실제적 정당성 즉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몇몇 경험 연구(김은경, 1999; 김혜선, 1999 등)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체벌은 이른바 ‘그 때 뿐인 반응효과’인 ‘대중효과’ 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의 기억 속에는 ‘맞았다’는 부정적인 정서효과만 남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체벌에 따르는 ‘합리적 절차’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교육자-피교육자 간의 수동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이 인격체 또는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는 시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에

어떠한 합리적 절차가 요구되는 것인가를 묻는 것은 어색한 질문일 뿐이다. 셋째, 두 번째 근거와 관련된 것으로 근대법 사상의 처벌에는 과연 체형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어느 법령에도 체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체벌은 학교폭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체벌,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 행위를 재생산 한다는 데에 있다. 즉 매 맞고 자란 청소년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성장하여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학교폭력

새로 마련된 청소년 현장에 의하면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현장에 따르면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이다.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빼앗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 자유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피해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 행위의 원인이 결손가정, 가정해체, 교사의 감정적 체벌 등(백승한, 1999)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면 가해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 피해자인 셈이다. 또 가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청소년이 또 다른 청소년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복합적 양상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관계에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을 야기하는 ‘인과연쇄망’⁵⁾은 환경, 부모, 행동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며, 폭력의 양태와 장소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검열로부터의 자유

‘검열’이 특정인의 행위를 방해하는 한, 검열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이란 특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행위와 청소년들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검사(monitoring)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경우 ‘특정한 목적’은 일반인의 경우에 ‘사회안전’ 또는 ‘공공질서’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체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적 필요’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검열로부터의 자유가 청소년이 가진 권리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필요’와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검열로부터의 자유가 청소년의 권리로 성립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소지품의 수색과 압수가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반드시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사회는 학교만큼 또는 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를 야기하는 교육의 장이다. 사회생활의 장면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신문, 방송, 잡지를 포함하는 대중 매체이다. 특히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인터넷의 활용은 청소년에게 주는 사회적 학습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적 재판의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승환(1999) 참조.

결과 보도되는 사회기사 보도 내용 등도 청소년의 권리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 문제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의 인권 침해가 일차적으로 소극적 자유권의 침해에 관련되어 있는 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이다. 성폭력 문제는 무릇 사회적 관계로서 성관계로 그릇되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은 폭력 중에 가장 가혹한 폭력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유형이다. 최근 들어서 보고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양상(조중신, 1999; 63-89)은 피해자의 저 연령화, 면식범(친족, 혈족, 이웃사람, 동급생, 선후배, 교사, 학교 관계자)에 의한 피해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년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고, 피해에 대한 해결이 매우 암암리에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곧 피해 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성폭력은 성폭력 자체가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유린하는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의사표현의 한계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라는 복합적 양상을 띤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또 다른 사회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이다. 성차별은 물론 사회에서만 조장되는 인권침해는 아니다. 가정에서 잠재적으로 조장되며, 학교에서도 교과서와 학습지도안 등과 같은 명시적인 경로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하여 조장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조장되는 성차별의 문제도 숙고해야 될 것이다.

2) 청소년 생활영역에서 권리의 제한

여기서는 청소년의 권리 제한에 주로 언급되는 주제인 권위적 간섭주의와 학교생활에서의 제한 및 청소년이 갖는 권리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권위적 간섭주의

① 권위적 간섭주의의 의미: 번역의 문제

‘권위적 간섭주의’는 영어의 ‘paternalism’의 번역어이다. 자유의 제한 및 그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paternalism’에 대한 우리말에 부합하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가부장적 간섭주의’라고 소개되어 있다. ‘paternalism’의 어간인 ‘pater-’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가부장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말의 축어적(逐語的) 의미에 충실한 일인지 모르지만, 윤리학적 논의나 정치이론에서 사용되는 ‘paternalism’의 의미는 단지 아버지의 간섭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Gerald Dworkin(1972: 64ff)에 따르면, ‘paternalism’은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그 때의 타인은 간섭 당하는 사람보다 권위를 많이 지닌 사람이다. 따라서 이 말의 번역어로서 ‘간섭주의’가 채택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번역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간섭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황한 번역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피 번역어가 지닌 논리적 속성(logical components)인 ‘권위’와 ‘간섭’을 가지고 축약하면 번역어는 ‘권위적 간섭주의’가 된다. 그러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권위적 간섭주의’라는 번역어를 ‘paternalism’의 형용사형인 ‘paternalistic’의 번역어로 채용하면 ‘권위적 간섭주의적’이 되어 그 용례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형용사형인 경우에 ‘paternalistic’의 번역어로 ‘권위간섭주의적’이라는 번역어를 채용하도록 한다.

② 권위적 간섭주의와 의무교육과정

권위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대부분 교사,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하여 청소년, 아동, 자녀 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권위적 간섭주의가 과연 정당화되는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적 간섭주의의 제한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 이슈가 바로 의무교육과정(compulsory curriculum)이다.

아이들의 이익 추구를 도모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자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율이란 ‘흥미-동기화-하고 싶은 것의 성취’의 과정에서 아동에게 일체의 간섭, 제약, 제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것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인간이 참여하는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White(1973)는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활동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인간이 참여하는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이 참여해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해 보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아동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은 전자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White의 주장은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된 의무교육 내용이 아이들의 삶에 정작 이익이 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정말로 할 수 있게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과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갈등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논거로 볼 때, 전자는 청소년의 복지권적 교육권으로, 그리고 후자는 청소년의 자유권적 의미에서 선택권(또는 저항권)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가 복지권적 의미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무지’라는 ‘결핍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가 자유권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자간의 갈등 내지 대립을 해소하는 방법이 꼭 집어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청소년의 복리(well-being)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2) 학교생활에서의 제한

이상에서 살펴본 권위적 간섭주의와 청소년 권리의 제한은 의무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유도 제한 받게 된다. 여기에는 학교의 제도적인 특성, 청소년의 재학관계, 공교육제도로서의 의무교육, 학칙 등에 의한 청소년 자유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는 청소년이 자율적 판단 능력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향유·행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적인 배려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정당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모색하는 일이다. 전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적어도 청소년의 인권침해 범위를 상정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전자는 교육개발의 과제이며, 후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과제이다.

(3) 사회생활에서의 제한

청소년의 권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국면 속에서 제한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 군입대, 결혼, 정치참여 등이다. 이들의 경우 제한은 주로 실정법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들 실정법은 청소년의 안전과 사회공리적 목적에 비추어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들 실정법적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와,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는 다분히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정당화 논의를 요구하며, 후자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명실공히 신장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일이 요구된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2.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3.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4.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5. 사회에서의 권리
6.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7. 권리신장 방안

III. 조사결과 분석

1.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1) 신체·언어적 학대

(1) 문항별 분석

<5-2> 내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

28.5%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29.2%)이 중학생(27.7%)보다, 실업고생(31.1%)이 인문고생(27.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3> 가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25.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29.5%)이 중학생(22.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5>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9.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5-6>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18.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학생(21.5%)이 대도시 외 지역의 학생(15.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0>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0.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10.7%)이 중학생(9.7%)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p=.018$).

(2) 종합분석

‘내 부모는 나를 비하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물음에 28.5%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5.9%의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18.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외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0.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열 명중 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네 명중 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의 의사존중 여부

(1) 문항별 분석

<5-1>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31.9%의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7> 내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57.7%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참여시킨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5-9> 내 부모는 평소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73.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평소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5-13> 나는 집에서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13.6%의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가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15.8%)이 중학생(11.4%)보다 더 많이 집에서 자기가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p=.000$).

<5-14> 내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64.9%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67.6%)이 여학생(61.9%)보다 더 많이 자기 부모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였다 ($p=.028$).

(2) 종합분석

31.9%의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7%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참여시킨다고 답변하였다. 73.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평소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답변하

였다. 13.6%의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가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4.9%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가정에서는 비교적 청소년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에서의 청소년 복지

(1) 문항별 분석

<5-4> 내 부모는 나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

16.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자신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20.3%)이 여학생(13.2%)보다, 고등학생(19.2%)이 중학생(14.7%)보다 더 많이 부모가 자신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5-8>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74.4%의 학생들이 자신은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8.7%)이 여학생(69.5%)보다, 중학생(81.4%)이 고등학생(67.3%)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5-11> 내 부모는 나를 잘 돌봐주신다

81%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82.8%)이 고등학생(79.1%)보다 더 많이 부모가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답변하였다.

<5-12> 내 부모는 내가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6.6%의 학생들이 자기가 어떻게 되든 부모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5>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19.0%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3.8%)이 남학생(14.6%)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16.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자신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4.4%의 학생들이 자신은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1%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6%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9.0%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네 명 중 세 명 정도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1) 자유권

(1) 문항별 분석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83.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6.8%)이 여학생(79.0%)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87.8%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88.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90.3%)이 여학생(86.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77.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75.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68.8%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5.3%)이 여학생(61.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79.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2.2%)이 여학생(76.6%)보다, 중학생(83.1%)이 고등학생(76.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83.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7.8%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8.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7.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5.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8.8%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9.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가정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 차이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권

(1) 문항별 분석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72.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6.2%)이 여학생(69.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80.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8.3%)이 여학생(77.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5.4%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88.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87.5%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2.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6.0%)이 여학생(79.5%)보다, 그리고 실업고 학생(86.7%)이 인문고 학생(80.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74.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8.6%)이 여학생(69.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8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2.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0.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5.4%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8.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7.5%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2.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4.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가정에서의 보호권도 대체로 높게 나왔으며,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중 보호권의 존중도를 살펴보면, 8개 문항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권리는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72.9%)’이며, 가장 높게 나타난 권리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88.3%)’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보호권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복지권

(1) 문항별 분석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서의 의사결정

6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

77.5%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제공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0.3%)이 여학생(74.3%)보다, 그리고 중학생(80.3%)이 고등학생(74.8%)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7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5.8%)이 여학생(67.8%)보다, 그리고 중학생(75.7%)이 고등학생(68.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8> 또래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74.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7.5%)이 여학생(70.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8.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1.9%)이 여학생(74.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80.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3.1%)이 여학생(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65.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3.1%)이 여학생(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5.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7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3.1%)이 여학생(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77.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81.1%)이 고등학생(74.4%)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6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7.5%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제공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80.3%)이 여학생(74.3%)보다, 그리고 중학생(80.3%)이 고등학생(74.8%)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75.8%)이 여학생(67.8%)보다, 그리고 중학생(75.7%)이 고등학생(68.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4.1%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77.5%)이 여학생(70.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8.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81.9%)이 여학생(74.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0.3%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83.1%)이 여학생(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5.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83.1%)이 여학생(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5.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83.1%)이 여학생

(77.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7.7%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81.1%)이 고등학생(74.4%)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대체적으로 복지권을 누리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복지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1) 학교에서의 신체·언어적 학대

(1) 문항별 분석

<6-1>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51.9%의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2.4%)이 여학생(51.3%)보다, 고등학생(57.7%)이 중학생(46%)보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6-3>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51.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68.6%)이 중학생(39.9%)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6-7>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67.5%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74.1%)이 남학생(61.6%)보다 그리고 고등학생(72.3%)이 중학생(62.7%)보다 더 많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다.

<6-8>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51.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58.1%)이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51.9%의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52.4%)이 여학생(51.3%)보다 고등학생(57.7%)이 중학생(4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68.6%)이 중학생(39.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5%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74.1%)이 남학생(61.6%)보다, 그리고 고등학생(72.3%)이 중학생(62.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5%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58.1%)이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학교에서의 차별

(1) 문항별 분석

<6-4>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25.6%의 학생들은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33.1%)이 남학생(19%)보다 고등학생(25.8%)이 중학생(25.5%)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6-5>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49.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53.5%)이 중학생(45.3%)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6>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76.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82.2%)이 남학생(72.1%)보다 그리고 고등학생(80.5%)이 중학생(73.2%)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여학생(33.1%)이 남학생(19%)보다, 고등학생(25.8%)이 중학생(25.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53.5%)이 중학생(45.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6.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82.2%)이 남학생(72.1%)보다 그리고 고등학생(80.5%)이 중학생(73.2%)보다 더 많이 그렇고 답변하였다.

3) 학교에서의 청소년 의사존중

(1) 문항별 분석

<6-9>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18.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1>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85.8%의 학생들이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88.8%)이 중학생(82.8%)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6-15>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30.8%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36.2%)이 고등학생(25.3%)보다 더 많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16>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26.7%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32.8%)이 여학생(20.0%)보다, 중학생(35.0%)이 고등학생(18.4%)보다, 인문고 학생(19.9%)이 실업고 학생(16.3%)보다 더 많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18.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5.8%의 학생들이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88.8%)이 중학생(82.8%)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0.8%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다양한 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6.2%)이 고등학생(25.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6.7%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32.8%)이 여학생(20.0%)보다, 중학생(35.0%)이 고등학생(18.4%)보다, 인문고 학생(19.9%)이 실업고 학생(16.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 학교에서의 청소년복지

(1) 문항별 분석

<6-2>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37.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46.1%)이 고등학생(29.6%)보다 ($p=0.00$), 인문고생(33.3%)이 실업고생(24.5%)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6-10>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24.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26.5%)이 중학생(21.5%)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6-12>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27.3%의 학생들이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32.1%)이 여학생(21.9%)보다, 중학생(32.3%)이 고등학생(22.4%)보다, 대도시 학생들이(28.3%)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26.4%)보다 더 많이 자기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13>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27.7%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33.7%)이 고등학생(21.7%)보다 더 많이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6-14>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33.6%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고 학생(45.0%)이 실업고 학생(19.1%)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39.3%) 대도시 지역 학생들(28.3%)보다 더 많이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37.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46.1%)이 고등학생(29.6%)보다, 인문고생(33.3%)이 실업고생

(24.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26.5%)이 중학생(21.5%)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27.3%의 학생들이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32.1%)이 여학생(21.9%)보다 더, 중학생(32.3%)이 고등학생(22.4%)보다 더, 대도시 학생들이(28.3%)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26.4%)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7.7%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3.7%)이 고등학생(21.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3.6%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45.0%)이 실업고 학생(19.1%)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39.3%) 대도시 지역 학생들(28.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1) 자유권

(1) 문항별 분석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39.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44.0%)이 여학생(33.7%)보다, 중학생(46.3%)이 고등학생(32.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52.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6.8%)이 여학생(47.1%)보다, 중학생(56.2%)이 고등학생(48.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52.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5.9%)이 여학생(49.4%)보다, 중학생(61.0%)이 고등학생(44.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62.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67.2%)이 여학생(58.0%)보다 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4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2.1%)이 여학생(43.4%)보다, 중학생(52.7%)이 고등학생(43.2%)보다, 실업고 학생(48.2%)이 인문고 학생(39.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36.3%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44.0%)이 여학생(27.8%)보다, 중학생(40.7%)이 고등학생(32.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67.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69.9%)이 여학생(65.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39.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44.0%)이 여학생(33.7%)보다, 중학생(46.3%)이 고등학생(32.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2.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56.8%)이 여학생(47.1%)보다, 중학생(56.2%)이 고등학생(48.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2.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55.9%)이 여학생(49.4%)보다, 중학생(61.0%)이 고등학생(44.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2.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67.2%)이 여학생(58.0%)보다 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52.1%)이 여학생(43.4%)보다, 중학생(52.7%)이 고등학생(43.2%)보다, 실업고 학생(48.2%)이 인문고 학생(39.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6.3%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44.0%)이 여학생

(27.8%)보다, 중학생(40.7%)이 고등학생(32.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69.9%)이 여학생(65.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중에서 자유권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로 62.8%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는 48.0%로 비교적 낮은 답변이 나왔다.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36.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39.1%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2) 보호권

(1) 문항별 분석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4.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43.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59.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6.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7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68.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70.8%)이 여학생(65.2%)보다, 중학생(72.0%)이 고등학생(64.4%)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70.4%)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64.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5.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36.7%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54.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3.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1%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6.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70.8%)이 여학생(65.2%)보다, 중학생(72.0%)이 고등학생(64.4%)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70.4%)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64.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5.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6.7%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중 보호권의 존중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을 거부할 권리(36.7%)’,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3.1%)’,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43.1%)’,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5.6%)’ 등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76.0%)’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68.2%)’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 및 환경을 자신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지도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복지권

(1) 문항별 분석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서의 의사결정

39.7%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

42.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제공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50.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생활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8> 또래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71.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0.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63.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52.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3%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55.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68.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중 복지권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권리는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65.6%)’이며, 가장 높게 나타난 권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85.7%)’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중 복지권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39.7%)’,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42.6%)’,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43.0%)’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71.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68.9%)’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6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사회에서의 권리

1) 선거권

<7> 선거권은 몇 세부터 부여하는 것이 적당한가

제일 많은 학생들이(29.5%) 선거권을 20세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27.2%)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이 19세(14.8%), 21세 이상(10.5%), 16세(9.9%), 17세(8.1%)가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p=.000$).

2) 권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식

(1) 문항별 분석

<8-1>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31.1%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8-2>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

22%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고 학생(24.9%)이 인문고 학생(20.5%)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24.6%)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18.2%)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9-1> 나는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15.8%의 학생들이 자신은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18.7%)이 중학생(12.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2> 나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5.2%의 학생들이 자신은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9-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15.2%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고 학생(17.7%)이 실업고 학생(11.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알고 있다.

24.3%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고 학생(26.2%)이 실업고 학생(16.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8>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28.5%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35.3%)이 고등학생(21.8%)보다, 실업고 학생(29.6%)이 인문고 학생(16.2%)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32.1%)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13> 나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7.6%의 학생들이 자신은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24.5%)이 중학생(10.6%)보다, 인문고 학생(32.7%)이 실업고 학생(13.3%)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5%)이 대도시 지역 학생(12.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31.1%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2%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업고 학생(24.9%)이 인문고 학생(20.5%)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24.6%)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18.2%)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15.8%의 학생들이 자신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18.7%)이 중학생(12.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5.2%의 학생들이 자신은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5.2%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17.7%)이 실업고 학생(11.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3%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26.2%)이 실업고 학생(16.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8.5%의 학생들이 자신은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5.3%)이 고등학생(21.8%)보다, 실업고 학생(29.6%)이 인문고 학생(16.2%)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32.1%)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7.6%의 학생들이 자신은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24.5%)이 중학생(10.6%)보다, 인문고 학생(32.7%)이 실업고 학생(13.3%)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5%)이 대도시 지역 학생(12.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 사회약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1) 문항별 분석

<8-3>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69.3%의 학생들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74.7%)이 중학생(63.9%)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70.6%)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70.6%)보다 더 많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다.

<8-4>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68.5%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73.8%)이 남학생(63.8%)보다, 고등학생(74.4%)이 중학생(61.4%)보다, 실업고 학생들(81.7%)이 인문고 학생들(70.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5>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7.8%의 학생들이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73.8%)이 중학생(61.7%)보다, 실업고 학생들(76.3%)이 인문고 학생들(72.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6>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58.9%의 학생들이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65.0%)이 중학생(51.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7>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18.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22.8%)이 여학생(12.9%)보다, 중학생(22.1%)이 고등학생(14.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8> 여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

81.6%의 학생들이 여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93.0%)이 남학생(71.2%)보다, 실업고 학생들(86.3%)이 인문고 학생들(80.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9>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24.7%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9-7>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41.8%의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45.4%)이 남학생(38.6%)보다, 실업고 학생들(47.1%)이 인문고 학생들(36.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69.3%의 학생들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74.7%)이 중학생(63.9%)보다, 대도시의 지역 학생들(70.6%)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70.6%)보다 더 많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다. 68.5%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73.8%)이 남학생(63.8%)보다, 고등학생(74.4%)이 중학생(61.4%)보다, 실업고 학생들(81.7%)이 인문고 학생들(70.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8%의 학생들이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73.8%)이 중학생(61.7%)보다, 실업고 학생들(76.3%)이 인문고 학생들(72.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8.9%의 학생들이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65.0%)이 중학생(51.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8.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22.8%)이 여학생(12.9%)보다, 중학생(22.1%)이 고등학생(14.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1.6%의 학생들이 여

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93.0%)이 남학생(71.2%)보다, 실업고 학생들(86.3%)이 인문고 학생들(80.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7%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41.8%의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45.4%)이 남학생(38.6%)보다, 실업고 학생들(47.1%)이 인문고 학생들(36.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 권리 주장성

(1) 문항별 분석

<9-4> 청소년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83.8%의 학생들이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
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49.6%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
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답변
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9>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47.7%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9-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75.1%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11>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48.2%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9-12>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54.7%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자신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종합분석

83.8%의 학생들이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

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6%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7.7%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75.1%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8.2%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라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4.7%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자신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라고 답변하였다.

6.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

1) 자유권

(1) 문항별 분석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83.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51.3%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58.4%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57.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58.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51.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64.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종합분석

83.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3%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8.4%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7.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8.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4.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중 자유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로 64.1%로 나타났다.

2) 보호권

(1) 문항별 분석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0.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49.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53.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61.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60%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2.3%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41.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50.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처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3.5%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0%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2.3%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1.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중 보호권의 존중도를 살펴보면 8개 권리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권리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61.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60.0%)’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권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을 거부할 권리(41.2%)’이며, 다음이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2.3%)’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가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을 강요하면서도 청소년들에게 부당하게 무관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복지권

(1) 문항별 분석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서의 의사결정

39.9%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

56.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60.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8> 또래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6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54.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55.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50.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4.4%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60.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66.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종합분석

39.9%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6.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0.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4.7%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5.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0.2%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

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4.4%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0.6%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6.1%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중 복지권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39.9%)’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44.4%)’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67.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66.1%)’와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60.6%)’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7. 권리신장 방안

1) 권리수준의 취약 원인

<10>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40.6%)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 입시제도와 과도한 학습과제(22.8%)를 들었다.

변인별로 교급간, 계열간 답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가 정

(1) 문항별 분석

<12-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80.3%의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80.6%의 학생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7.8%의 학생이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25>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7.2%의 학생이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71.1%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종합분석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80.3%의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80.6%의 학생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67.8%의 학생이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2%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71.1%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3) 학 교

(1) 문항별 분석

<12-1>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6.7%의 학생들이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2>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9.3%의 학생들이 자치활동 강화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3> 학급당 인원 감축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49.5%의 학생이 학급당 인원 감축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2%의 학생이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5> 교칙 및 규칙의 완화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9.4%의 학생이 교칙 및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0.2%의 학생이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1.7%의 학생이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8>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3.4%의 학생이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5.1%의 학생이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0> 인성교육의 확대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8.5%의 학생이 인성교육의 확대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6.3%의 학생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1.3%의 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종합분석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56.7%의 학생들이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3%의 학생들이 자치활동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5%의 학생이 학급당 인원 감축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2%의 학생이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4%의 학생이 교칙 및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0.2%의 학생이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7%의 학생이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3.4%의 학생이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5.1%의 학생이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5%의 학생이 인성교육의 확대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6.3%의 학생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3%의 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사 회

(1) 문항별 분석

<12-13>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71.5%의 학생이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14>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0.5%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보급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3.4%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보급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7.1%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7>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49.2%의 학생이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18>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9.7%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2-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7.7%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20>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68%의 학생이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2-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72.1%의 학생이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종합분석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71.5%의 학생이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50.5%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3.4%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보급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7.1%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2%의 학생이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9.7%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67.7%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의 학생이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2.1%의 학생이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및 제언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 이론적 배경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청소년권리의 속성은 ‘보편성’과 ‘천부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권리의 범주로서 일반권과 특정권, 실정권과 도덕권, 고전적 권리와 현대적 권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하여 보았고, 이를 토대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권리의 실질적인 핵심은 참여권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선택권의 신장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아나 질병 상태에서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복지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권은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리고 복지권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지·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복지권과 참여권은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복지권은 참여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논거가 여러 가지 있다. 특히 교육에서 의무교육과정이나 권위적 간섭주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권리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청소년 생활의 장인 학교, 사회, 가정에서의 제한에는 문화적 요인이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결과

(1)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① 가정에서의 신체·언어적 학대

'내 부모는 나를 비하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물음에 28.5%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5.9%의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9.6%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18.9%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외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0.2%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열 명중 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네 명중 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가정에서의 청소년 의사존중

31.9%의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7%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참여시킨다고 답변하였다. 73.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평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답변하였다. 13.6%의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가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4.9%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가정에서는 비교적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정에서의 청소년 복지

16.9%의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는 자신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4.4%의 학생들은 자신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1%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6%의 학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부모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9.0%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① 학교에서의 신체·언어적 학대

51.9%의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52.4%)이 여학생(51.3%)보다, 고등학생(57.7%)이 중학생(4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8%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68.6%)이 중학생(39.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5%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74.1%)이 남학생(61.6%)보다 그리고 고등학생(72.3%)이 중학생(62.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1.5%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58.1%)이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② 학교에서의 차별

여학생(33.1%)이 남학생(19%)보다, 고등학생(25.8%)이 중학생(25.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4%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53.5%)이 중학생(45.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6.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82.2%)이 남학생(72.1%)보다, 그리고 고등학생(80.5%)이 중학생(73.2%)보다 더 많이 그렇고 답변하였다.

③ 학교에서의 청소년 의사존중

18.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5.8%의 학생들이 교칙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88.8%)이 중학생(82.8%)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0.8%의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양한 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6.2%)이 고등학생(25.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6.7%의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32.8%)이 여학생(20.0%)보다, 중학생(35.0%)이 고등학생(18.4%)보다, 인문고 학생(19.9%)이 실업고 학생(16.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④ 학교에서의 청소년 복지

37.8%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46.1%)이 고등학생(29.6%)보다, 인문고생(33.3%)이 실업고생(24.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0%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26.5%)이 중학생

(21.5%)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27.3%의 학생들은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32.1%)이 여학생(21.9%)보다, 중학생(32.3%)이 고등학생(22.4%)보다, 대도시 학생들이(28.3%)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26.4%)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7.7%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3.7%)이 고등학생(21.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3.6%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45.0%)이 실업고 학생(19.1%)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39.3%) 대도시 지역 학생들(28.3%)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① 선거권

제일 많은 학생들이(29.5%) 선거권을 20세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27.2%) 선거권을 18세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19세(14.8%), 21세 이상(10.5%), 16세(9.9%), 17세(8.1%)가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② 권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식

31.1%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2%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업고 학생(24.9%)이 인문

고 학생(20.5%)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24.6%)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18.2%)보다 더 많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15.8%의 학생들은 자신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18.7%)이 중학생(12.7%)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5.2%의 학생들은 자신이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5.2%의 학생들은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17.7%)이 실업고 학생(11.2%)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3%의 학생들은 자신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고 학생(26.2%)이 실업고 학생(16.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8.5%의 학생들은 자신이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35.3%)이 고등학생(21.8%)보다, 실업고 학생(29.6%)이 인문고 학생(16.2%)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32.1%)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7.6%의 학생들은 자신이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24.5%)이 중학생(10.6%)보다, 인문고 학생(32.7%)이 실업고 학생(13.3%)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24.5%)이 대도시 지역 학생(12.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③ 사회약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69.3%의 학생들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74.7%)이 중학생(63.9%)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70.6%)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70.6%)보다 더 많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답변하였다. 68.5%의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하였으며, 여학생(73.8%)이 남학생(63.8%)보다, 고등학생(74.4%)이 중학생(61.4%)보다 더, 실업고 학생들(81.7%)이 인문고 학생들(70.9%)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7.8%의 학생들은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73.8%)이 중학생(61.7%)보다, 실업고 학생들(76.3%)이 인문고 학생들(72.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8.9%의 학생들은 현재 근로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65.0%)이 중학생(51.6%)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18.1%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법정에서 가난한자나 부자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22.8%)이 여학생(12.9%)보다, 중학생(22.1%)이 고등학생(14.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1.6%의 학생들은 여성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93.0%)이 남학생(71.2%)보다, 실업고 학생들(86.3%)이 인문고 학생들(80.1%)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4.7%의 학생들은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41.8%의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의 경우 왕따 당해 마땅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45.4%)이 남학생(38.6%)보다, 실업고 학생들(47.1%)이 인문고 학생들(36.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④ 권리 주장성

83.8%의 학생들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6%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

였다. 47.7%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75.1%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8.2%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라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들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4.7%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자신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라고 답변하였다.

(4)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존중도 비교

① 자유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 자유권에의 존중도를 비교해 보면, 7개 문항에 대해서 모두 가정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경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이나 사회에 비해서 학교에서는 특히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도 낮게 나타났다.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서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를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 청소년 자유권

문 항	존 중 도		
	가정	학교	사회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83.1%	39.1%	83.1%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87.8%	52.2%	51.3%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88.2%	52.8%	58.4%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77.1%	62.8%	57.5%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75.6%	48.0%	58.7%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68.8%	36.3%	51.2%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79.6%	67.6%	64.1%

② 보호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 보호권의 존중도를 비교해 보면, 가정이 학교나 사회에 비해 8개 항목 모두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처벌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받을 권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에 있어서는 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정이나 사회보다 부자유스럽고, 가장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를 가정이나 학교보다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무관심하고,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약물남용이나 비행에 쉽게 빠지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 청소년 보호권

문 항	존 중 도		
	가정	학교	사회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7.0%	43.1%	50.6%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72.9%	43.1%	49.5%
11-10 약탈납품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80.6%	59.1%	53.5%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5.4%	66.2%	51.0%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88.3%	76.0%	61.6%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87.5%	68.2%	60.0%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2.9%	45.6%	42.3%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74.3%	36.7%	41.2%

③ 복지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 복지권의 존중도를 비교해 보면, 가정이 전체 항목에서 학교나 사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거의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와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에서 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문화생활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교육 및 정보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사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 복지권

문항	존중도		
	가정	학교	사회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	67.0%	39.7%	39.9%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	77.5%	42.6%	56.7%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72.0%	50.5%	60.2%
11-18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여할 권리	74.1%	71.0%	67.0%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8.6%	60.6%	54.7%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80.3%	63.4%	55.1%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66.6%	52.4%	50.2%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5.7%	43.0%	44.4%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79.0%	55.9%	60.6%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77.7%	68.9%	66.1%

(5) 청소년권리 신장방안

① 청소년 권리수준의 열악한 원인

학생들은 청소년 권리수준이 열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40.6%)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 입시제도와 과도한 학습과제(22.8%)를 들었다.

② 가정에서의 권리 신장 방안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6.7%의 학생들이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3%의 학생들이 자치활동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5%의 학생이 학급당 인원 감축이 효과 있

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2%의 학생이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4%의 학생이 교칙 및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0.2%의 학생이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7%의 학생이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3.4%의 학생이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5.1%의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5%의 학생은 인성교육의 확대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6.3%의 학생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고, 61.3%의 학생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③ 학교에서의 권리 신장 방안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56.7%의 학생들은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3%의 학생들은 자치활동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5%의 학생은 학급당 인원 감축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2%의 학생은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

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9.4%의 학생은 교칙 및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보다,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0.2%의 학생은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7%의 학생은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3.4%의 학생은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5.1%의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5%의 학생은 인성교육의 확대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66.3%의 학생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도시 외 지역 학생이 대도시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1.3%의 학생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사회에서의 권리 신장 방안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71.5%의 학생은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다. 50.5%의 학생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3.4%의 학생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보급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57.1%의 학생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이 대도시 외 지역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9.2%의 학생은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9.7%의 학생은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67.7%의 학생은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8%의 학생은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2.1%의 학생은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는 학교 및 지역사회보다 가정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권리는 지역요인보다 성별, 교급별, 계열별 변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권리는 학업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성적을 이유로 욕설과 체벌이 나타나고 있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그리고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역시 학업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입시교육 위주의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이 청소년의 권리 제한 및 유예의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간섭'이나 '제재'는 당연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하나의 가치(공부, 입시 등)가 청소년권리의 제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에게 다른 유의미한 권리의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오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 규율, 교칙, 그리고 사회속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복지권 등과 같은 본래적 권리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들 보다 언어, 체벌 등을 중심으로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직 청소년들이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청소년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사회적 노력이 이행되더라도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실체로 청소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적 가치, 관습 등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는 그 사회의 역사,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의견표명권' 등에 대한 지식이 낮게 나타나거나, 참정권,

복지권의 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사회문화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봉건주의 의식이 청소년의 권리 제한 및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 혹은 사회구성원 의식의 내면에는 아직도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속하고 있다. 예컨대, 반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권위주의, 가부장제에 근거한 전통적인 수직적 인간관계 규범 등은 모두 봉건주의 의식의 잔재들이다. 이같은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소외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율로 작동해 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영역 속에서 인간적 권리가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 여건은 청소년권리의 제한 및 침해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권리의 주요 개념인 참여권, 자유권, 복지권 등이 서로 상충되는 이론적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은 적극적 자유권에 해당되지만, 참여권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학습한다는 교육적인 측면과 참여권의 보장이 청소년 권리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고 노력을 해야 할 청소년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참여권은 자기결정의 과정을 핵으로 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육받을 청소년의 복지권과 일면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 양육의 명목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유권은 복지권과 상충되고 있다. 복지권은 청소년들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복지권은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어디까지가 교육적 차원, 또는 교권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유권 및 복지권의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논쟁거리를 제공한

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주요 개념의 속성과 범주와 관련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의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권리 관련 규정의 제정·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정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체제상의 문제로 단일법안 제정이 불가능하다면, 각 상위의 권리(인권)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및 학부모 대상의 ‘청소년권리 주체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각종의 사회교육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교사, 부모 대상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CD, 비디오, 홍보책자 등으로 제작·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권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권리와 관련한 교육이 정규교육인 학교 교과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권리가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행위 윤리로 볼 때, 공교육 부분에서 권리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 의식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정규 교과과정 속에 권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권리보호기구’의 설치 및 각 교육청 단위의 대책기구(가칭 ‘청소년권리보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청소년권리보호기구’에는 상담, 교육, 권리관련 정보센터의 기능은 물론 청소년권리 침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교육청 단위의 대책기구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 침해 신고접수, 상담, 예방

활동, 진상조사 등 학교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관련 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청소년들의 참여를 인정·보장·유도하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충족될 경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결정, 예컨대 학교규율의 제·개정, 학교행사 일정, 학교교육방침의 결정 등에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준수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단체(NGO)차원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시민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지원이 요구되며, 민간단체는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정 조치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성인들의 의식을 계몽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확산 역할에 주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일곱째,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권리의 주요 요소인 참여권, 자유권, 복지권 등은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권리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명료성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차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과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1998a). 교육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사전. 춘천: 하우.
- 강인수(1998b). 교원의 교육권의 정당화와 한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제3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김신일(1998a). 학습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사전. 춘천: 하우.
- _____(1998b). 학교교육에서의 학습권의 위상.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제3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김은경(1999). 교사체벌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인권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래(1998a). 權利理論과 教育權.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1998b). 教育權과 學習權: 教育받을 權利에 대한 哲學的 論議.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_____(1998c).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의미.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_____(1999a).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당화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_____(1999b). 아동인권교육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세계의 아동인권교육 현황,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김혜선(1999). 학생지도, '체벌'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으로 접근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9, 교육적 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박경숙 외(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승한(1999). 학교폭력과 학생의 인권신장.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
인권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제3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성민선(1998).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교교육에서
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제3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
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해숙(1997). 교사에 의한 성폭력: 교육적 문제와 대책.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발표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
력상담소.
- _____. 외(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의식 고취방안. 서울: 한
국여성개발원.
- 정해숙(1999). 성차별과 여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 학생인권 신장방
안 모색. 학생인권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중신(1999). 학교에서의 성폭력.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인권세미
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
원회.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교육적 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서울: 한국청소
년연구원.

- Brownie, I. (ed.)(1994). *Basic Documents on Human Rights*. 3rd ed. Oxford: Clarendon.
- Davidson, S.(1993). *Human Right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Hohfeld, W. N.(1919).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eeman, M and Veerman, P.(1992).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Dortrecht: Martinus Nijhoff.
- Gutmann, A.(1980). Children, Paternalism and Education: A Liberal Argume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9. 338-58.
- Hart, R. A.(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UNICEF.
- Jenson, M. and Goffin, S. (eds.)(1993). *Visions of Enlightenmen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ones, P.(1994). *Rights*. London: Macmillan.
- Kim, J-N(1996). Well-being and Education in a Liberal Society.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ty of Keele, England.
- Peters, R. S.(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Raphael, D. D. (ed.)(1967). *Political Theory and the Rights of Man*. London: Macmillan.
- Save the Children(1997). *UN Convention the Rights of the Child —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Geneva: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 Straus, A. M.(1991). 'Discipline and Deviance: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Violence and other Crime in Adulthood', *Social Problem* Vol. 38, No. 2.

- Thomson, Garrett(1987). *Need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aldron, J. (ed.)(1984). *Theories of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J.(1973). *Towards a Compulsory Curriculum*.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White, J.(1982). *The Aims of Education Restat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White, J.(1990). *Education and the Good Life*. London: Kogan Page.
- Wringe, C. A.(1981). *Children's Rights*. London: Routledge & Kegan.

부 록

1. 설문지
2. 교차집계표

1. 설문지

--	--	--	--

권리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요령

1. 응답 내용은 반드시 같이 배부해 드린 <응답지>에 기재해 주십시오.

2000. 11.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우)137-715
연구진 : 정회욱 · 길은배(2188-8843) / 팩스 : 2188-8819

- 12) 나의 부모는 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 13) 집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 14) 나의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 ① ② ③ ④
- 15)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문 6] 다음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서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 ① ② ③ ④
- 2)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 3)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 4)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 ① ② ③ ④
- 5)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 ① ② ③ ④
- 6)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 ① ② ③ ④
- 7)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 ① ② ③ ④
- 8)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 ① ② ③ ④
- 9) 학교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 10)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 11)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① ② ③ ④
- 12)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 ① ② ③ ④

13)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 ① ② ③ ④

14)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 ① ② ③ ④

15)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 ① ② ③ ④

[문 7] 선거권은 몇 세부터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6세

② 17세

③ 18세

④ 19세

⑤ 20세

⑥ 21세 이상

[문 8] 다음은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1)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2)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팸플렛 등)을 받아본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3)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 ① ② ③ ④

4)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② ③ ④

5)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6)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 ① ② ③ ④

- 8) 여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 --- ① ② ③ ④
 9)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청소년의 권리주장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 나는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 ① ② ③ ④
 2) 나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① ② ③ ④
 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 ① ② ③ ④
 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알고 있다 ----- ① ② ③ ④
 7)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 ① ② ③ ④
 8)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 ① ② ③ ④
 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① ② ③ ④

- 11)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 ① ② ③ ④
- 12)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① ② ③ ④
- 13) 나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① ② ③ ④

[문 10]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선택해 V표 해 주십시오.

- 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 부족
 ② 성인들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③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④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
 ⑤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

[문 11] 청소년의 권리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의 각 영역마다 하나씩 표기 바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존중 됨	존중 안됨	존중 됨	존중 안됨	존중 됨	존중 안됨

<예시>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 ① ② ① ② ① ②

- 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 ----- ① ② ① ② ① ②

- 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 ----- ① ② ① ② ① ②

- 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

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 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18)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 ① ② ① ② ① ②

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① ② ① ② ① ②

[문 12] 다음에 제시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방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효과 있음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1)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	①	②	③	④
2)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	①	②	③	④
3) 학급당 인원 감축 -----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	①	②	③	④
5) 교칙 및 규칙을 완화 -----	①	②	③	④
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	①	②	③	④
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	①	②	③	④
8)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	①	②	③	④
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	①	②	③	④
10) 인성교육의 확대 -----	①	②	③	④
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 -----	①	②	③	④
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 -----	①	②	③	④
13)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 -----	①	②	③	④
14)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 -----	①	②	③	④
1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프로그램 제작 보급 -----	①	②	③	④
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방영 --	①	②	③	④
17)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	①	②	③	④
18)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 -	①	②	③	④
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 -----	①	②	③	④
20)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 -	①	②	③	④

- | | | | | |
|--|---|---|---|---|
| 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 | ① | ② | ③ | ④ |
| 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 | ① | ② | ③ | ④ |
| 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 | ① | ② | ③ | ④ |
| 25)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 | ① | ② | ③ | ④ |
| 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 ----- | ① | ② | ③ | ④ |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교차집계표

<부록표 5-2> 내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9(4.6%)	162(25.6%)	254(40.1%)	188(29.7%)	.216
	여자	26(4.5%)	127(22.1%)	237(41.2%)	185(32.2%)	
교급	중학교	22(3.7%)	144(24.0%)	229(38.2%)	205(34.2%)	.044
	고등학교	33(5.4%)	145(23.8%)	262(43.1%)	168(27.6%)	
계열	인문고	15(4.3%)	83(23.6%)	154(43.9%)	99(28.2%)	.298
	실업고	18(7.0%)	62(24.1%)	108(42.0%)	69(26.8%)	
지역	대도시	31(4.7%)	180(27.1%)	258(38.8%)	196(29.5%)	.092
	대도시 외	24(4.7%)	106(20.6%)	223(43.3%)	162(31.5%)	
전체빈도(비율)		55(4.6)	289(23.9)	491(40.6)	373(30.9)	1208
누적비율		4.6	28.5	69.1	100.0	

<부록표 5-3> 가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2(6.6%)	111(17.4%)	206(32.3%)	278(43.6%)	.435
	여자	31(5.4%)	130(22.6%)	171(29.7%)	243(42.3%)	
교급	중학교	25(4.1%)	110(18.2%)	174(28.8%)	296(48.9%)	.000
	고등학교	48(7.9%)	131(21.6%)	203(33.4%)	225(37.1%)	
계열	인문고	31(8.9%)	73(20.9%)	123(35.1%)	123(35.1%)	.349
	실업고	17(6.6%)	58(22.6%)	80(31.1%)	102(39.7%)	
지역	대도시	39(5.8%)	141(21.1%)	210(31.5%)	277(41.5%)	.566
	대도시 외	33(6.4%)	98(19.0%)	160(31.0%)	225(43.6%)	
전체빈도(비율)		73(6.0)	241(19.9)	377(31.1)	521(43.0)	1212
누적비율		6.0	25.9	57.0	100.0	

<부록표 5-5>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5(2.4%)	45(7.1%)	268(42.0%)	310(48.6%)	.488
	여자	6(1.0%)	51(8.9%)	227(39.5%)	291(50.6%)	
교급	중학교	15(2.5%)	45(7.4%)	253(41.8%)	292(48.3%)	.258
	고등학교	6(1.0%)	51(8.4%)	242(39.8%)	309(50.8%)	
계열	인문고	2(0.6%)	31(8.8%)	152(43.3%)	166(47.3%)	.187
	실업고	4(1.6%)	20(7.8%)	90(35.0%)	143(55.6%)	
지역	대도시	13(1.9%)	46(6.9%)	282(42.2%)	327(49.0%)	.708
	대도시 외	7(1.4%)	49(9.5%)	208(40.3%)	252(48.8%)	
전체빈도(비율)		21(1.7)	96(7.9)	495(40.8)	601(49.5)	1213
누적비율		1.7	9.6	50.5	100.0	

<부록표 5-6>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4(3.8%)	104(16.3%)	189(29.6%)	321(50.3%)	.058
	여자	19(3.3%)	82(14.3%)	148(25.7%)	326(56.7%)	
교급	중학교	23(3.8%)	96(15.9%)	168(27.8%)	318(52.6%)	.460
	고등학교	20(3.3%)	90(14.8%)	169(27.8%)	329(54.1%)	
계열	인문고	11(3.1%)	58(16.5%)	104(29.6%)	178(50.7%)	.101
	실업고	9(3.5%)	32(12.5%)	65(25.3%)	151(58.8%)	
지역	대도시	25(3.7%)	119(17.8%)	186(27.8%)	338(50.6%)	.029
	대도시 외	16(3.1%)	66(12.8%)	149(28.9%)	285(55.2%)	
전체빈도(비율)		43(3.5)	186(15.3)	337(27.8)	647(53.3)	1213
누적비율		3.5	18.9	46.7	100.0	

<부록표 5-10>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7(4.2%)	47(7.4%)	163(25.5%)	401(62.9%)	.256
	여자	11(1.9%)	39(6.8%)	165(28.7%)	360(62.6%)	
교급	중학교	19(3.1%)	40(6.6%)	138(22.8%)	408(67.4%)	.018
	고등학교	19(3.1%)	46(7.6%)	190(31.3%)	353(58.1%)	
계열	인문고	12(3.4%)	21(6.0%)	102(29.1%)	216(61.5%)	.092
	실업고	7(2.7%)	25(9.7%)	88(34.2%)	137(53.3%)	
지역	대도시	15(2.2%)	55(8.2%)	181(27.1%)	417(62.4%)	.915
	대도시 외	22(4.3%)	27(5.2%)	142(27.5%)	325(63.0%)	
전체빈도(비율)		38(3.1)	86(7.1)	328(27.0)	761(62.7)	1213
누적비율		3.1	10.2	37.3	100.0	

<부록표 5-1>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5.2%)	179(28.2%)	331(52.1%)	92(14.5%)	.145
	여자	23(4.0%)	151(26.3%)	305(53.1%)	95(16.6%)	
교급	중학교	39(6.5%)	171(28.5%)	290(48.3%)	101(16.8%)	.105
	고등학교	17(2.8%)	159(26.2%)	346(56.9%)	86(14.1%)	
계열	인문고	11(3.1%)	93(26.5%)	202(57.5%)	45(12.8%)	.332
	실업고	6(2.3%)	66(25.7%)	144(56.0%)	41(16.0%)	
지역	대도시	31(4.7%)	186(27.9%)	341(51.2%)	108(16.2%)	.714
	대도시 외	20(3.9%)	134(26.0%)	287(55.7%)	74(14.4%)	
전체빈도(비율)		56(4.6)	330(27.30)	636(52.6)	187(15.5)	1209
누적비율		4.6	31.9	84.5	100.0	

<부록표 5-7> 내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99(15.5%)	264(41.4%)	190(29.8%)	85(13.3%)	.564
	여자	81(14.1%)	255(44.4%)	177(30.8%)	61(10.6%)	
교급	중학교	107(17.7%)	255(42.2%)	162(26.8%)	80(13.2%)	.122
	고등학교	73(12.0%)	264(43.4%)	205(33.7%)	66(10.9%)	
계열	인문고	45(12.8%)	150(42.7%)	118(33.6%)	38(10.8%)	.739
	실업고	28(10.9%)	114(44.4%)	87(33.9%)	28(10.9%)	
지역	대도시	104(15.6%)	277(41.5%)	200(29.9%)	87(13.0%)	.876
	대도시 외	70(13.6%)	228(44.3%)	160(31.1%)	57(11.1%)	
전체빈도(비율)		180(14.9)	519(42.8)	367(30.3)	146(12.0)	1212
누적비율		14.9	57.7	88.0	100.0	

<부록표 5-9> 내 부모는 평소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53(24.0%)	320(50.2%)	126(19.7%)	39(6.1%)	.767
	여자	139(24.2%)	285(49.6%)	125(21.7%)	26(4.5%)	
교급	중학교	159(26.3%)	290(47.9%)	118(19.5%)	38(6.3%)	.506
	고등학교	133(21.9%)	315(51.8%)	133(21.9%)	27(4.4%)	
계열	인문고	85(24.2%)	175(49.9%)	76(21.7%)	15(4.3%)	.285
	실업고	48(18.7%)	140(54.5%)	57(22.2%)	12(4.7%)	
지역	대도시	146(21.9%)	338(50.6%)	153(22.9%)	31(4.6%)	.138
	대도시 외	138(26.7%)	255(49.4%)	91(17.6%)	32(6.2%)	
전체빈도(비율)		292(24.1)	605(49.9)	251(20.7)	65(5.4)	1213
누적비율		24.1	73.9	94.6	100.0	

<부록표 5-13> 집에서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7(2.7%)	68(10.7%)	239(37.5%)	314(49.2%)	.556
	여자	16(2.8%)	64(11.1%)	223(38.8%)	272(47.3%)	
교급	중학교	20(3.3%)	49(8.1%)	201(33.2%)	335(55.4%)	.000
	고등학교	13(2.1%)	83(13.7%)	261(42.9%)	251(41.3%)	
계열	인문고	7(2.0%)	44(12.5%)	156(44.4%)	144(41.0%)	.665
	실업고	6(2.3%)	39(15.2%)	105(40.9%)	107(41.6%)	
지역	대도시	14(2.1%)	75(11.2%)	256(38.3%)	323(48.4%)	.523
	대도시 외	18(3.5%)	55(10.7%)	197(38.2%)	246(47.7%)	
전체빈도(비율)		33(2.7)	132(10.9)	462(38.1)	586(48.3)	1213
누적비율		2.7	13.6	51.7	100.0	

<부록표 5-14> 내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34(21.0%)	297(46.6%)	156(24.5%)	51(8.0%)	.028
	여자	102(17.7%)	254(44.2%)	161(28.0%)	58(10.1%)	
교급	중학교	157(26.0%)	235(38.8%)	153(25.3%)	60(9.9%)	.029
	고등학교	79(13.0%)	316(52.0%)	164(27.0%)	49(8.1%)	
계열	인문고	45(12.8%)	184(52.4%)	94(26.8%)	28(8.0%)	.947
	실업고	34(13.2%)	132(51.4%)	70(27.2%)	21(8.2%)	
지역	대도시	133(19.9%)	286(42.8%)	195(29.2%)	54(8.1%)	.899
	대도시 외	93(18.0%)	255(49.4%)	115(22.3%)	53(10.3%)	
전체빈도(비율)		236(19.5)	551(45.4)	317(26.1)	109(9.0)	1213
누적비율		19.5	64.9	91.0	100.0	

<부록표 5-4> 내 부모는 나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2(3.5%)	107(16.8%)	296(46.5%)	211(33.2%)	.000
	여자	8(1.4%)	68(11.8%)	260(45.2%)	239(41.6%)	
교급	중학교	9(1.5%)	80(13.2%)	251(41.6%)	264(43.7%)	.000
	고등학교	21(3.5%)	95(15.7%)	305(50.2%)	186(30.6%)	
계열	인문고	16(4.6%)	52(14.9%)	175(50.0%)	107(30.6%)	.576
	실업고	5(1.9%)	43(16.7%)	130(50.6%)	79(30.7%)	
지역	대도시	17(2.5%)	96(14.4%)	303(45.4%)	251(37.6%)	.814
	대도시 외	13(2.5%)	73(14.2%)	242(47.0%)	187(36.3%)	
전체빈도(비율)		30(2.5)	175(14.5)	556(45.9)	450(37.2)	1211
누적비율		2.5	16.9	62.8	100.0	

<부록표 5-8>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71(26.8%)	331(51.9%)	103(16.1%)	33(5.2%)	.010
	여자	133(23.1%)	267(46.4%)	150(26.1%)	25(4.3%)	
교급	중학교	206(34.0%)	287(47.4%)	93(15.4%)	19(3.1%)	.000
	고등학교	98(16.1%)	311(51.2%)	160(26.3%)	39(6.4%)	
계열	인문고	59(16.8%)	176(50.1%)	93(26.5%)	23(6.6%)	.932
	실업고	39(15.2%)	135(52.5%)	67(26.1%)	16(6.2%)	
지역	대도시	165(24.7%)	337(50.4%)	137(20.5%)	29(4.3%)	.440
	대도시 외	127(24.6%)	249(48.3%)	111(21.5%)	29(5.6%)	
전체빈도(비율)		304(25.1)	598(49.3)	253(20.9)	58(4.8)	1213
누적비율		25.1	74.4	95.2	100.0	

<부록표 5-11> 내 부모는 나를 잘 돌봐주신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11(33.1%)	305(47.8%)	86(13.5%)	36(5.6%)	.917
	여자	176(30.6%)	290(50.4%)	87(15.1%)	22(3.8%)	
교급	중학교	243(40.2%)	258(42.6%)	70(11.6%)	34(5.6%)	.000
	고등학교	144(23.7%)	337(55.4%)	103(16.9%)	24(3.9%)	
계열	인문고	82(23.4%)	200(57.0%)	59(16.8%)	10(2.8%)	.442
	실업고	62(24.1%)	137(53.3%)	44(17.1%)	14(5.4%)	
지역	대도시	213(31.9%)	333(49.9%)	93(13.9%)	29(4.3%)	.539
	대도시 외	162(31.4%)	252(48.8%)	75(14.5%)	27(5.2%)	
전체빈도(비율)		387(31.9)	595(49.1)	173(14.3)	58(4.8)	1213
누적비율		31.9	81.0	95.2	100.0	

<부록표 5-12> 내 부모는 내가 어떻게 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6(2.5%)	25(3.9%)	211(33.1%)	386(60.5%)	.913
	여자	12(2.1%)	27(4.7%)	186(32.3%)	350(60.9%)	
교급	중학교	17(2.8%)	23(3.8%)	159(26.3%)	406(67.1%)	.003
	고등학교	11(1.8%)	29(4.8%)	238(39.1%)	330(54.3%)	
계열	인문고	3(0.9%)	17(4.8%)	135(38.5%)	196(55.8%)	.146
	실업고	8(3.1%)	12(4.7%)	103(40.1%)	134(52.1%)	
지역	대도시	15(2.2%)	30(4.5%)	224(33.5%)	399(59.7%)	.465
	대도시 외	12(2.3%)	18(3.5%)	167(32.4%)	319(61.8%)	
전체빈도(비율)		28(2.3)	52(4.3)	397(32.7)	736(60.7)	1213
누적비율		2.3	6.6	39.3	100.0	

<부록표 5-15>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6(4.1%)	67(10.5%)	240(37.7%)	303(47.6%)	.000
	여자	37(6.4%)	100(17.4%)	220(38.3%)	218(37.9%)	
교급	중학교	35(5.8%)	73(12.1%)	205(34.0%)	290(48.1%)	.025
	고등학교	28(4.6%)	94(15.5%)	255(41.9%)	231(38.0%)	
계열	인문고	17(4.8%)	56(16.0%)	136(38.7%)	142(40.5%)	.608
	실업고	11(4.3%)	38(14.8%)	119(46.3%)	89(34.6%)	
지역	대도시	30(4.5%)	92(13.8%)	263(39.4%)	282(42.3%)	.897
	대도시 외	31(6.0%)	70(13.6%)	185(35.9%)	229(44.5%)	
전체빈도(비율)		63(5.2)	167(13.8)	460(38.0)	521(43.0)	1211
누적비율		5.2	19.0	57.0	100.0	

<부록표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52(86.8%)	84(13.2%)	.000
	여자	452(79.0%)	120(21.0%)	
교급	중학교	508(84.4%)	94(15.6%)	.240
	고등학교	496(81.8%)	110(18.2%)	
계열	인문고	290(82.9%)	60(17.1%)	.452
	실업고	206(80.5%)	50(19.5%)	
지역	대도시	556(83.7%)	108(16.3%)	.325
	대도시 외	420(81.6%)	95(18.4%)	
전체빈도(비율)		1004(83.1)	204(16.9)	1208
누적비율		83.1	100.0	

<부록표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64(88.8%)	71(11.2%)	.264
	여자	496(86.7%)	76(13.3%)	
교급	중학교	518(86.2%)	83(13.8%)	.085
	고등학교	542(89.4%)	64(10.6%)	
계열	인문고	313(89.4%)	37(10.6%)	.992
	실업고	229(89.5%)	27(10.5%)	
지역	대도시	581(87.6%)	82(12.4%)	.944
	대도시 외	452(87.8%)	63(12.2%)	
전체빈도(비율)		1060(87.8)	147(12.2)	1207
누적비율		87.8	100.0	

<부록표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74(90.3%)	62(9.7%)	.022
	여자	492(86.0%)	80(14.0%)	
교급	중학교	541(89.9%)	61(10.1%)	.081
	고등학교	525(86.6%)	81(13.4%)	
계열	인문고	302(86.3%)	48(13.7%)	.769
	실업고	223(87.1%)	33(12.9%)	
지역	대도시	583(87.8%)	81(12.2%)	.621
	대도시 외	457(88.7%)	58(11.3%)	
전체빈도(비율)		1066(88.2)	142(11.8)	1208
누적비율		88.2	100.0	

<부록표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00(78.6%)	136(21.4%)	.178
	여자	431(75.3%)	141(24.7%)	
교육	중학교	456(75.7%)	146(24.3%)	.276
	고등학교	475(78.4%)	131(21.6%)	
계열	인문고	278(79.4%)	72(20.6%)	.465
	실업고	197(77.0%)	59(23.0%)	
지역	대도시	511(77.0%)	153(23.0%)	.896
	대도시 외	398(77.3%)	117(22.7%)	
전체빈도(비율)		931(77.1)	277(22.9)	1208
누적비율		77.1	100.0	

<부록표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91(77.2%)	145(22.8%)	.167
	여자	422(73.8%)	150(26.2%)	
교육	중학교	454(75.4%)	148(24.6%)	.895
	고등학교	459(75.7%)	147(24.3%)	
계열	인문고	269(76.9%)	81(23.1%)	.455
	실업고	190(74.2%)	66(25.8%)	
지역	대도시	497(74.8%)	167(25.2%)	.463
	대도시 외	395(76.7%)	120(23.3%)	
전체빈도(비율)		913(75.6)	295(24.4)	1208
누적비율		75.6	100.0	

<부록표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8(75.3%)	157(24.7%)	.000
	여자	353(61.7%)	219(38.3%)	
교육	중학교	415(69.1%)	186(30.9%)	.879
	고등학교	416(68.6%)	190(31.4%)	
계열	인문고	247(70.6%)	103(29.4%)	.233
	실업고	169(66.0%)	87(34.0%)	
지역	대도시	461(69.4%)	203(30.6%)	.675
	대도시 외	351(68.3%)	163(31.7%)	
전체빈도(비율)		831(68.8)	376(31.2)	1207
누적비율		68.8	100.0	

<부록표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23(82.2%)	113(17.8%)	.015
	여자	438(76.6%)	134(23.4%)	
교급	중학교	500(83.1%)	102(16.9%)	.003
	고등학교	461(76.1%)	145(23.9%)	
계열	인문고	264(75.4%)	86(24.6%)	.665
	실업고	197(77.0%)	59(23.0%)	
지역	대도시	527(79.4%)	137(20.6%)	.952
	대도시 외	408(79.2%)	107(20.8%)	
전체빈도(비율)		961(79.6)	247(20.4)	1208
누적비율		79.6	100.0	

<부록표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56(87.4%)	80(12.6%)	.657
	여자	496(86.6%)	77(13.4%)	
교급	중학교	516(85.6%)	87(14.4%)	.137
	고등학교	536(88.4%)	70(11.6%)	
계열	인문고	306(87.4%)	44(12.6%)	.359
	실업고	230(89.8%)	26(10.2%)	
지역	대도시	574(86.3%)	91(13.7%)	.527
	대도시 외	451(87.6%)	64(12.4%)	
전체빈도(비율)		1052(87.0)	157(13.0)	1209
누적비율		87.0	100.0	

<부록표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83(76.2%)	151(23.8%)	.007
	여자	397(69.3%)	176(30.7%)	
교급	중학교	441(73.3%)	161(26.7%)	.786
	고등학교	439(72.6%)	166(27.4%)	
계열	인문고	255(73.1%)	94(26.9%)	.746
	실업고	184(71.9%)	72(28.1%)	
지역	대도시	494(74.5%)	169(25.5%)	.143
	대도시 외	364(70.7%)	151(29.3%)	
전체빈도(비율)		880(72.9)	327(27.1)	1207
누적비율		72.9	100.0	

<부록표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30(83.3%)	106(16.7%)	.012
	여자	444(77.6%)	128(22.4%)	
교급	중학교	497(82.6%)	105(17.4%)	.091
	고등학교	477(78.7%)	129(21.3%)	
계열	인문고	276(78.9%)	74(21.1%)	.919
	실업고	201(78.5%)	55(21.5%)	
지역	대도시	544(81.9%)	120(18.1%)	.116
	대도시 외	403(78.3%)	112(21.7%)	
전체빈도(비율)		974(80.6)	234(19.4)	1208
누적비율		80.6	100.0	

<부록표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 · 약물 · 시설 · 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54(87.2%)	81(12.8%)	.060
	여자	478(83.4%)	95(16.6%)	
교급	중학교	524(87.0%)	78(13.0%)	.113
	고등학교	508(83.8%)	98(16.2%)	
계열	인문고	301(86.0%)	49(14.0%)	.090
	실업고	207(80.9%)	49(19.1%)	
지역	대도시	565(85.1%)	99(14.9%)	.795
	대도시 외	441(85.6%)	74(14.4%)	
전체빈도(비율)		1032(85.4)	176(14.6)	1208
누적비율		85.4	100.0	

<부록표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56(87.4%)	80(12.6%)	.301
	여자	511(89.3%)	61(10.7%)	
교급	중학교	532(88.4%)	70(11.6%)	.962
	고등학교	535(88.3%)	71(11.7%)	
계열	인문고	312(89.1%)	38(10.9%)	.443
	실업고	223(87.1%)	33(12.9%)	
지역	대도시	586(88.3%)	78(11.7%)	.877
	대도시 외	456(88.5%)	59(11.5%)	
전체빈도(비율)		1067(88.3)	141(11.7)	1208
누적비율		88.3	100.0	

<부록표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64(88.7%)	72(11.3%)	.192
	여자	493(86.2%)	79(13.8%)	
교급	중학교	521(86.5%)	81(13.5%)	.317
	고등학교	536(88.4%)	70(11.6%)	
계열	인문고	314(89.7%)	36(10.3%)	.255
	실업고	222(86.7%)	34(13.3%)	
지역	대도시	582(87.7%)	82(12.3%)	.811
	대도시 외	449(87.2%)	66(12.8%)	
전체빈도(비율)		1057(87.5)	151(12.5)	1208
누적비율		87.5	100.0	

<부록표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47(86.0%)	89(14.0%)	.003
	여자	455(79.5%)	117(20.5%)	
교급	중학교	498(82.7%)	104(17.3%)	.838
	고등학교	504(83.2%)	102(16.8%)	
계열	인문고	282(80.6%)	68(19.4%)	.046
	실업고	222(86.7%)	34(13.3%)	
지역	대도시	556(83.7%)	108(16.3%)	.285
	대도시 외	419(81.4%)	96(18.6%)	
전체빈도(비율)		1002(82.9)	206(17.1)	1208
누적비율		82.9	100.0	

<부록표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00(78.6%)	136(21.4%)	.000
	여자	398(69.6%)	174(30.4%)	
교급	중학교	439(72.9%)	163(27.1%)	.262
	고등학교	459(75.7%)	147(24.3%)	
계열	인문고	258(73.7%)	92(26.3%)	.174
	실업고	201(78.5%)	55(21.5%)	
지역	대도시	497(74.8%)	167(25.2%)	.523
	대도시 외	377(73.2%)	138(26.8%)	
전체빈도(비율)		898(74.3)	310(25.7)	1208
누적비율		74.3	100.0	

<부록표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37(68.8%)	198(31.2%)	.163
	여자	372(65.0%)	200(35.0%)	
교급	중학교	413(68.7%)	188(31.3%)	.213
	고등학교	396(65.3%)	210(34.7%)	
계열	인문고	229(65.4%)	121(34.6%)	.961
	실업고	167(65.2%)	89(34.8%)	
지역	대도시	457(68.9%)	206(31.1%)	.106
	대도시 외	332(64.5%)	183(35.5%)	
전체빈도(비율)		809(67.0)	398(33.0)	1207
누적비율		67.0	100.0	

<부록표 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11(80.3%)	125(19.7%)	.013
	여자	426(74.3%)	147(25.7%)	
교급	중학교	484(80.3%)	119(19.7%)	.022
	고등학교	453(74.8%)	153(25.2%)	
계열	인문고	259(74.0%)	91(26.0%)	.619
	실업고	194(75.8%)	62(24.2%)	
지역	대도시	520(78.2%)	145(21.8%)	.443
	대도시 외	393(76.3%)	122(23.7%)	
전체빈도(비율)		937(77.5)	272(22.5)	1209
누적비율		77.5	100.0	

<부록표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82(75.8%)	154(24.2%)	.002
	여자	388(67.8%)	184(32.2%)	
교급	중학교	456(75.7%)	146(24.3%)	.004
	고등학교	414(68.3%)	192(31.7%)	
계열	인문고	237(67.7%)	113(32.3%)	.710
	실업고	177(69.1%)	79(30.9%)	
지역	대도시	498(75.0%)	166(25.0%)	.008
	대도시 외	350(68.0%)	165(32.0%)	
전체빈도(비율)		870(72.0)	338(28.0)	1208
누적비율		72.0	100.0	

<부록표 11-18>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93(77.5%)	143(22.5%)	.004
	여자	403(70.3%)	170(29.7%)	
교급	중학교	451(74.8%)	152(25.2%)	.590
	고등학교	445(73.4%)	161(26.6%)	
계열	인문고	261(74.6%)	89(25.4%)	.459
	실업고	184(71.9%)	72(28.1%)	
지역	대도시	504(75.8%)	161(24.2%)	.093
	대도시 외	368(71.5%)	147(28.5%)	
전체빈도(비율)		896(74.1)	313(25.9)	1209
누적비율		74.1	100.0	

<부록표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21(81.9%)	115(18.1%)	.003
	여자	429(74.9%)	144(25.1%)	
교급	중학교	476(78.9%)	127(21.1%)	.760
	고등학교	474(78.2%)	132(21.8%)	
계열	인문고	282(80.6%)	68(19.4%)	.101
	실업고	192(75.0%)	64(25.0%)	
지역	대도시	521(78.3%)	144(21.7%)	.903
	대도시 외	405(78.6%)	110(21.4%)	
전체빈도(비율)		950(78.6)	259(21.4)	1209
누적비율		78.6	100.0	

<부록표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28(83.1%)	107(16.9%)	.009
	여자	442(77.1%)	131(22.9%)	
교급	중학교	488(81.1%)	114(18.9%)	.506
	고등학교	482(79.5%)	124(20.5%)	
계열	인문고	284(81.1%)	66(18.9%)	.253
	실업고	198(77.3%)	58(22.7%)	
지역	대도시	535(80.6%)	129(19.4%)	.682
	대도시 외	410(79.6%)	105(20.4%)	
전체빈도(비율)		970(80.3)	238(19.7)	1208
누적비율		80.3	100.0	

<부록표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57(71.9%)	179(28.1%)	.000
	여자	336(58.7%)	236(41.3%)	
교급	중학교	405(67.3%)	197(32.7%)	.235
	고등학교	388(64.0%)	218(36.0%)	
계열	인문고	229(65.4%)	121(34.6%)	.401
	실업고	159(62.1%)	97(37.9%)	
지역	대도시	449(67.6%)	215(32.4%)	.079
	대도시 외	323(62.7%)	192(37.3%)	
전체빈도(비율)		793(65.6)	415(34.4)	1208
누적비율		65.6	100.0	

<부록표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49(86.3%)	87(13.7%)	.502
	여자	486(85.0%)	86(15.0%)	
교급	중학교	527(87.5%)	75(12.5%)	.066
	고등학교	508(83.8%)	98(16.2%)	
계열	인문고	294(84.0%)	56(16.0%)	.893
	실업고	214(83.6%)	42(16.4%)	
지역	대도시	570(85.8%)	94(14.2%)	.634
	대도시 외	437(84.9%)	78(15.1%)	
전체빈도(비율)		1035(85.7)	173(14.3)	1208
누적비율		85.7	100.0	

<부록표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18(81.6%)	117(18.4%)	.019
	여자	435(76.0%)	137(24.0%)	
교급	중학교	480(79.9%)	121(20.1%)	.440
	고등학교	473(78.1%)	133(21.9%)	
계열	인문고	273(78.0%)	77(22.0%)	.971
	실업고	200(78.1%)	56(21.9%)	
지역	대도시	519(78.3%)	144(21.7%)	.579
	대도시 외	410(79.6%)	105(20.4%)	
전체빈도(비율)		953(79.0)	254(21.0)	1207
누적비율		79.0	100.0	

<부록표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정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508(79.9%)	128(20.1%)	.059
	여자	431(75.3%)	141(24.7%)	
교급	중학교	488(81.1%)	114(18.9%)	.006
	고등학교	451(74.4%)	155(25.6%)	
계열	인문고	262(74.9%)	88(25.1%)	.775
	실업고	189(73.8%)	67(26.2%)	
지역	대도시	527(79.4%)	137(20.6%)	.136
	대도시 외	390(75.7%)	125(24.3%)	
전체빈도(비율)		939(77.7)	269(22.3)	1208
누적비율		77.7	100.0	

<부록표 6-1>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95(15.0%)	237(37.4%)	232(36.7%)	69(10.9%)	.022
	여자	53(9.3%)	240(42.0%)	191(33.4%)	88(15.4%)	
교급	중학교	85(14.2%)	190(31.8%)	229(38.3%)	94(15.7%)	.008
	고등학교	63(10.4%)	287(47.3%)	194(32.0%)	63(10.4%)	
계열	인문고	37(10.5%)	174(49.6%)	103(29.3%)	37(10.5%)	.384
	실업고	26(10.2%)	113(44.1%)	91(35.5%)	26(10.2%)	
지역	대도시	87(13.1%)	242(36.4%)	237(35.7%)	98(14.8%)	.120
	대도시 외	58(11.3%)	225(43.9%)	174(34.0%)	55(10.7%)	
전체빈도(비율)		148(12.3)	477(39.6)	423(35.1)	157(13.0)	1205
누적비율		12.3	51.9	87.0	100.0	

<부록표 6-3>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18(18.5%)	219(34.3%)	173(27.1%)	128(20.1%)	.795
	여자	111(19.3%)	180(31.3%)	168(29.2%)	116(20.2%)	
교급	중학교	73(12.1%)	138(22.8%)	197(32.6%)	197(32.6%)	.000
	고등학교	156(25.7%)	261(42.9%)	144(23.7%)	47(7.7%)	
계열	인문고	79(22.5%)	155(44.2%)	94(26.8%)	23(6.6%)	.206
	실업고	77(30.0%)	106(41.2%)	50(19.5%)	24(9.3%)	
지역	대도시	125(18.7%)	214(32.0%)	190(28.4%)	139(20.8%)	.216
	대도시 외	102(19.8%)	180(34.9%)	139(26.9%)	95(18.4%)	
전체빈도(비율)		229(18.9)	399(32.9)	341(28.1)	244(20.1)	1213
누적비율		18.9	51.8	79.9	100.0	

<부록표 6-7>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변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51(23.7%)	242(37.9%)	186(29.2%)	59(9.2%)	.000
	여자	170(29.6%)	256(44.5%)	114(19.8%)	35(6.1%)	
교급	중학교	145(24.0%)	234(38.7%)	157(26.0%)	69(11.4%)	.000
	고등학교	176(28.9%)	264(43.4%)	143(23.5%)	25(4.1%)	
계열	인문고	94(26.8%)	151(43.0%)	90(25.6%)	16(4.6%)	.072
	실업고	82(31.9%)	113(44.0%)	53(20.6%)	9(3.5%)	
지역	대도시	169(25.3%)	278(41.6%)	161(24.1%)	60(9.0%)	.101
	대도시 외	148(28.7%)	210(40.7%)	126(24.4%)	32(6.2%)	
전체빈도(비율)		321(26.5)	498(41.1)	300(24.7)	94(7.7)	1213
누적비율		26.5	67.5	92.3	100.0	

<부록표 6-8> 학교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욕을 들은 경험이 있다

변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38(21.6%)	182(28.5%)	204(32.0%)	114(17.9%)	.291
	여자	141(24.5%)	164(28.5%)	170(29.6%)	100(17.4%)	
교급	중학교	123(20.3%)	149(24.6%)	179(29.6%)	154(25.5%)	.000
	고등학교	156(25.7%)	197(32.4%)	195(32.1%)	60(9.9%)	
계열	인문고	88(25.1%)	111(31.6%)	119(33.9%)	33(9.4%)	.653
	실업고	68(26.5%)	86(33.5%)	76(29.6%)	27(10.5%)	
지역	대도시	148(22.2%)	192(28.7%)	203(30.4%)	125(18.7%)	.109
	대도시 외	129(25.0%)	147(28.5%)	165(32.0%)	75(14.5%)	
전체빈도(비율)		279(23.0)	346(28.5)	374(30.8)	214(17.6)	1213
누적비율		23.0	51.5	82.4	100.0	

<부록표 6-4> 집이 가난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변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5.2%)	88(13.8%)	263(41.2%)	254(39.8%)	.000
	여자	40(7.0%)	150(26.1%)	229(39.8%)	156(27.1%)	
교급	중학교	33(5.5%)	121(20.0%)	212(35.0%)	239(39.5%)	.011
	고등학교	40(6.6%)	117(19.2%)	280(46.1%)	171(28.1%)	
계열	인문고	21(6.0%)	63(17.9%)	164(46.7%)	103(29.3%)	.213
	실업고	19(7.4%)	54(21.0%)	116(45.1%)	68(26.5%)	
지역	대도시	36(5.4%)	129(19.3%)	272(40.7%)	231(34.6%)	.362
	대도시 외	34(6.6%)	102(19.8%)	211(40.9%)	169(32.8%)	
전체빈도(비율)		73(6.0)	238(19.6)	492(40.6)	410(33.8)	1213
누적비율		6.0	25.6	66.2	100.0	

<부록표 6-5>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21(19.2%)	186(29.5%)	156(24.7%)	168(26.6%)	.150
	여자	81(14.2%)	205(36.0%)	198(34.8%)	85(14.9%)	
교급	중학교	112(18.9%)	156(26.4%)	165(27.9%)	159(26.9%)	.008
	고등학교	90(14.8%)	235(38.7%)	189(31.1%)	94(15.5%)	
계열	인문고	51(14.5%)	143(40.7%)	109(31.1%)	48(13.7%)	.300
	실업고	39(15.2%)	92(35.8%)	80(31.1%)	46(17.9%)	
지역	대도시	110(16.5%)	224(33.6%)	185(27.7%)	148(22.2%)	.884
	대도시 외	85(16.9%)	158(31.3%)	161(31.9%)	100(19.8%)	
전체빈도(비율)		202(16.8)	391(32.6)	354(29.5)	253(21.1)	1200
누적비율		16.8	49.4	78.9	100.0	

<부록표 6-6>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06(32.3%)	254(39.8%)	134(21.0%)	44(6.9%)	.000
	여자	237(41.2%)	236(41.0%)	76(13.2%)	26(4.5%)	
교급	중학교	222(36.7%)	221(36.5%)	115(19.0%)	47(7.8%)	.028
	고등학교	221(36.3%)	269(44.2%)	95(15.6%)	23(3.8%)	
계열	인문고	126(35.9%)	166(47.3%)	50(14.2%)	9(2.6%)	.231
	실업고	95(37.0%)	103(40.1%)	45(17.5%)	14(5.4%)	
지역	대도시	236(35.3%)	264(39.5%)	124(18.6%)	44(6.6%)	.060
	대도시 외	194(37.6%)	218(42.2%)	82(15.9%)	22(4.3%)	
전체빈도(비율)		443(36.5)	490(40.4)	210(17.3)	70(5.8)	1213
누적비율		36.5	76.9	94.2	100.0	

<부록표 6-9> 나는 학교에서 항상 무시당하는 편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5(3.9%)	91(14.3%)	308(48.3%)	214(33.5%)	.077
	여자	27(4.7%)	81(14.1%)	312(54.3%)	155(27.0%)	
교급	중학교	28(4.6%)	83(13.7%)	264(43.6%)	230(38.0%)	.001
	고등학교	24(3.9%)	89(14.6%)	356(58.6%)	139(22.9%)	
계열	인문고	11(3.1%)	45(12.8%)	211(60.1%)	84(23.9%)	.075
	실업고	13(5.1%)	44(17.1%)	145(56.4%)	55(21.4%)	
지역	대도시	24(3.6%)	101(15.1%)	330(49.4%)	213(31.9%)	.341
	대도시 외	26(5.0%)	66(12.8%)	279(54.1%)	145(28.1%)	
전체빈도(비율)		52(4.3)	172(14.2)	620(51.1)	369(30.4)	1213
누적비율		4.3	18.5	69.6	100.0	

<부록표 6-11> 교칙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378(59.2%)	170(26.6%)	58(9.1%)	32(5.0%)	.417
	여자	372(64.7%)	121(21.0%)	46(8.0%)	36(6.3%)	
교급	중학교	356(58.8%)	145(24.0%)	67(11.1%)	37(6.1%)	.009
	고등학교	394(64.8%)	146(24.0%)	37(6.1%)	31(5.1%)	
계열	인문고	229(65.2%)	91(25.9%)	15(4.3%)	16(4.6%)	.244
	실업고	165(64.2%)	55(21.4%)	22(8.6%)	15(5.8%)	
지역	대도시	397(59.4%)	169(25.3%)	61(9.1%)	41(6.1%)	.069
	대도시 외	337(65.3%)	113(21.9%)	39(7.6%)	27(5.2%)	
전체빈도(비율)		750(61.8)	291(24.0)	104(8.6)	68(5.6)	1213
누적비율		61.8	85.8	94.4	100.0	

<부록표 6-15>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1(6.4%)	168(26.3%)	265(41.5%)	164(25.7%)	.160
	여자	26(4.5%)	138(24.0%)	259(45.0%)	152(26.4%)	
교급	중학교	43(7.1%)	176(29.1%)	232(38.3%)	154(25.5%)	.002
	고등학교	24(3.9%)	130(21.4%)	292(48.0%)	162(26.6%)	
계열	인문고	12(3.4%)	86(24.5%)	170(48.4%)	83(23.6%)	.068
	실업고	12(4.7%)	44(17.1%)	122(47.5%)	79(30.7%)	
지역	대도시	42(6.3%)	153(22.9%)	291(43.6%)	182(27.2%)	.194
	대도시 외	25(4.8%)	150(29.1%)	217(42.1%)	124(24.0%)	
전체빈도(비율)		67(5.5)	306(25.2)	524(43.2)	316(26.1)	1213
누적비율		5.5	30.8	73.9	100.0	

<부록표 6-16>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7.4%)	162(25.4%)	255(40.0%)	174(27.3%)	.000
	여자	21(3.7%)	94(16.3%)	248(43.1%)	212(36.9%)	
교급	중학교	46(7.6%)	166(27.4%)	217(35.9%)	176(29.1%)	.000
	고등학교	22(3.6%)	90(14.8%)	286(47.0%)	210(34.5%)	
계열	인문고	13(3.7%)	57(16.2%)	174(49.6%)	107(30.5%)	.039
	실업고	9(3.5%)	33(12.8%)	112(43.6%)	103(40.1%)	
지역	대도시	45(6.7%)	144(21.6%)	255(38.2%)	224(33.5%)	.627
	대도시 외	21(4.1%)	104(20.2%)	240(46.5%)	151(29.3%)	
전체빈도(비율)		68(5.6)	256(21.1)	503(41.5)	386(31.8)	1213
누적비율		5.6	26.7	68.2	100.0	

<부록표 6-2>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4(6.9%)	209(32.8%)	271(42.5%)	113(17.7%)	.289
	여자	37(6.4%)	168(29.2%)	265(46.1%)	105(18.3%)	
교급	중학교	65(10.8%)	213(35.3%)	238(39.4%)	88(14.6%)	.000
	고등학교	16(2.6%)	164(27.0%)	298(49.0%)	130(21.4%)	
계열	인문고	11(3.1%)	106(30.2%)	173(49.3%)	61(17.4%)	.002
	실업고	5(1.9%)	58(22.6%)	125(48.6%)	69(26.8%)	
지역	대도시	48(7.2%)	218(32.6%)	275(41.2%)	127(19.0%)	.537
	대도시 외	30(5.8%)	153(29.7%)	249(48.3%)	84(16.3%)	
전체빈도(비율)		81(6.7)	377(31.1)	536(44.2)	218(18.0)	1212
누적비율		6.7	37.8	82.0	100.0	

<부록표 6-10>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1(6.4%)	101(15.8%)	265(41.5%)	231(36.2%)	.070
	여자	25(4.3%)	124(21.6%)	260(45.2%)	166(28.9%)	
교급	중학교	31(5.1%)	99(16.4%)	226(37.4%)	249(41.2%)	.000
	고등학교	35(5.8%)	126(20.7%)	299(49.2%)	148(24.3%)	
계열	인문고	18(5.1%)	69(19.7%)	175(49.9%)	89(25.4%)	.243
	실업고	17(6.6%)	57(22.2%)	124(48.2%)	59(23.0%)	
지역	대도시	30(4.5%)	130(19.5%)	296(44.3%)	212(31.7%)	.969
	대도시 외	34(6.6%)	90(17.4%)	218(42.2%)	174(33.7%)	
전체빈도(비율)		66(5.4)	225(18.5)	525(43.3)	397(32.7)	1213
누적비율		5.4	24.0	67.3	100.0	

<부록표 6-12>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2(6.6%)	163(25.5%)	251(39.3%)	182(28.5%)	.000
	여자	16(2.8%)	110(19.1%)	222(38.6%)	227(39.5%)	
교급	중학교	36(6.0%)	159(26.3%)	219(36.2%)	191(31.6%)	.001
	고등학교	22(3.6%)	114(18.8%)	254(41.8%)	218(35.9%)	
계열	인문고	13(3.7%)	69(19.7%)	166(47.3%)	103(29.3%)	.008
	실업고	9(3.5%)	45(17.5%)	88(34.2%)	115(44.7%)	
지역	대도시	35(5.2%)	154(23.1%)	232(34.7%)	247(37.0%)	.291
	대도시 외	23(4.5%)	113(21.9%)	231(44.8%)	149(28.9%)	
전체빈도(비율)		58(4.8)	273(22.5)	473(39.0)	409(33.7)	1213
누적비율		4.8	27.3	66.3	100.0	

<부록표 6-13> 수업시간에 소지품/두발/복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53(8.3%)	130(20.4%)	194(30.4%)	261(40.9%)	.692
	여자	39(6.8%)	114(19.8%)	195(33.9%)	227(39.5%)	
교급	중학교	62(10.2%)	142(23.5%)	173(28.6%)	228(37.7%)	.000
	고등학교	30(4.9%)	102(16.8%)	216(35.5%)	260(42.8%)	
계열	인문고	17(4.8%)	62(17.7%)	129(36.8%)	143(40.7%)	.370
	실업고	13(5.1%)	40(15.6%)	87(33.9%)	117(45.5%)	
지역	대도시	58(8.7%)	133(19.9%)	210(31.4%)	267(40.0%)	.264
	대도시 외	32(6.2%)	101(19.6%)	172(33.3%)	211(40.9%)	
전체빈도(비율)		92(7.6)	244(20.1)	389(32.1)	488(40.2)	1213
누적비율		7.6	27.7	59.8	100.0	

<부록표 6-14> 자율학습 등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54(8.5%)	162(25.4%)	206(32.3%)	216(33.9%)	.844
	여자	59(10.3%)	133(23.1%)	187(32.5%)	196(34.1%)	
교급	중학교	72(11.9%)	129(21.3%)	193(31.9%)	211(34.9%)	.653
	고등학교	41(6.7%)	166(27.3%)	200(32.9%)	201(33.1%)	
계열	인문고	31(8.8%)	127(36.2%)	114(32.5%)	79(22.5%)	.000
	실업고	10(3.9%)	39(15.2%)	86(33.5%)	122(47.5%)	
지역	대도시	51(7.6%)	138(20.7%)	224(33.5%)	255(38.2%)	.000
	대도시 외	58(11.2%)	145(28.1%)	163(31.6%)	150(29.1%)	
전체빈도(비율)		113(9.3)	295(24.3)	393(32.4)	412(34.0)	1213
누적비율		9.3	33.6	66.0	100.0	

<부록표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80(44.0%)	356(56.0%)	.000
	여자	192(33.7%)	378(66.3%)	
교급	중학교	278(46.3%)	323(53.7%)	.000
	고등학교	194(32.1%)	411(67.9%)	
계열	인문고	122(34.9%)	228(65.1%)	.085
	실업고	72(28.2%)	183(71.8%)	
지역	대도시	271(40.9%)	391(59.1%)	.228
	대도시 외	193(37.5%)	322(62.5%)	
전체빈도(비율)		472(39.1)	734(60.9)	1206
누적비율		39.1	100.0	

<부록표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1(56.8%)	275(43.2%)	.001
	여자	269(47.1%)	302(52.9%)	
교급	중학교	338(56.2%)	263(43.8%)	.005
	고등학교	292(48.2%)	314(51.8%)	
계열	인문고	172(49.0%)	179(51.0%)	.637
	실업고	120(47.1%)	135(52.9%)	
지역	대도시	361(54.4%)	302(45.6%)	.093
	대도시 외	255(49.5%)	260(50.5%)	
전체빈도(비율)		630(52.2)	577(47.8)	1207
누적비율		52.2	100.0	

<부록표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56(55.9%)	281(44.1%)	.024
	여자	282(49.4%)	289(50.6%)	
교급	중학교	367(61.0%)	235(39.0%)	.000
	고등학교	271(44.7%)	335(55.3%)	
계열	인문고	161(45.9%)	190(54.1%)	.505
	실업고	110(43.1%)	145(56.9%)	
지역	대도시	351(52.9%)	313(47.1%)	.779
	대도시 외	268(52.0%)	247(48.0%)	
전체빈도(비율)		638(52.8)	570(47.2)	1208
누적비율		52.8	100.0	

<부록표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28(67.2%)	209(32.8%)	.001
	여자	331(58.0%)	240(42.0%)	
교급	중학교	392(65.1%)	210(34.9%)	.102
	고등학교	367(60.6%)	239(39.4%)	
계열	인문고	205(58.4%)	146(41.6%)	.203
	실업고	162(63.5%)	93(36.5%)	
지역	대도시	428(64.5%)	236(35.5%)	.152
	대도시 외	311(60.4%)	204(39.6%)	
전체빈도(비율)		759(62.8)	449(37.2)	1208
누적비율		62.8	100.0	

<부록표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2(52.1%)	305(47.9%)	.002
	여자	248(43.4%)	324(56.6%)	
교급	중학교	318(52.7%)	285(47.3%)	.001
	고등학교	262(43.2%)	344(56.8%)	
계열	인문고	139(39.6%)	212(60.4%)	.034
	실업고	123(48.2%)	132(51.8%)	
지역	대도시	331(49.8%)	334(50.2%)	.107
	대도시 외	232(45.0%)	283(55.0%)	
전체빈도(비율)		580(48.0)	629(52.0)	1209
누적비율		48.0	100.0	

<부록표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80(44.0%)	356(56.0%)	.000
	여자	159(27.8%)	413(72.2%)	
교급	중학교	245(40.7%)	357(59.3%)	.002
	고등학교	194(32.0%)	412(68.0%)	
계열	인문고	117(33.3%)	234(66.7%)	.415
	실업고	77(30.2%)	178(69.8%)	
지역	대도시	253(38.0%)	412(62.0%)	.256
	대도시 외	179(34.8%)	335(65.2%)	
전체빈도(비율)		439(36.3)	769(63.7)	1208
누적비율		36.3	100.0	

<부록표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45(69.9%)	192(30.1%)	.074
	여자	372(65.0%)	200(35.0%)	
교급	중학교	417(69.2%)	186(30.8%)	.243
	고등학교	400(66.0%)	206(34.0%)	
계열	인문고	223(63.5%)	128(36.5%)	.132
	실업고	177(69.4%)	78(30.6%)	
지역	대도시	459(69.0%)	206(31.0%)	.274
	대도시 외	340(66.0%)	175(34.0%)	
전체빈도(비율)		817(67.6)	392(32.4)	1209
누적비율		67.6	100.0	

<부록표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8(57.9%)	268(42.1%)	.014
	여자	290(50.8%)	281(49.2%)	
교급	중학교	365(60.6%)	237(39.4%)	.000
	고등학교	293(48.4%)	312(51.6%)	
계열	인문고	160(45.7%)	190(54.3%)	.118
	실업고	133(52.2%)	122(47.8%)	
지역	대도시	366(55.2%)	297(44.8%)	.343
	대도시 외	270(52.4%)	245(47.6%)	
전체빈도(비율)		658(54.5)	549(45.5)	1207
누적비율		54.5	100.0	

<부록표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09(48.6%)	327(51.4%)	.000
	여자	211(37.0%)	360(63.0%)	
교급	중학교	285(47.4%)	316(52.6%)	.002
	고등학교	235(38.8%)	371(61.2%)	
계열	인문고	141(40.2%)	210(59.8%)	.410
	실업고	94(36.9%)	161(63.1%)	
지역	대도시	300(45.2%)	363(54.8%)	.095
	대도시 외	208(40.4%)	307(59.6%)	
전체빈도(비율)		520(43.1)	687(56.9)	1207
누적비율		43.1	100.0	

<부록표 11-10>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95(62.0%)	242(38.0%)	.028
	여자	318(55.8%)	252(44.2%)	
교급	중학교	373(62.1%)	228(37.9%)	.035
	고등학교	340(56.1%)	266(43.9%)	
계열	인문고	193(55.0%)	158(45.0%)	.515
	실업고	147(57.6%)	108(42.4%)	
지역	대도시	405(61.1%)	258(38.9%)	.129
	대도시 외	292(56.7%)	223(43.3%)	
전체빈도(비율)		713(59.1)	494(40.9)	1207
누적비율		59.1	100.0	

<부록표 11-11> 신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36(68.4%)	201(31.6%)	.085
	여자	364(63.7%)	207(36.3%)	
교급	중학교	410(68.1%)	192(31.9%)	.169
	고등학교	390(64.4%)	216(35.6%)	
계열	인문고	222(63.2%)	129(36.8%)	.505
	실업고	168(65.9%)	87(34.1%)	
지역	대도시	446(67.2%)	218(32.8%)	.405
	대도시 외	334(64.9%)	181(35.1%)	
전체빈도(비율)		800(66.2)	408(33.8)	1208
누적비율		66.2	100.0	

<부록표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8(75.0%)	159(25.0%)	.403
	여자	441(77.1%)	131(22.9%)	
교급	중학교	455(75.5%)	148(24.5%)	.651
	고등학교	464(76.6%)	142(23.4%)	
계열	인문고	257(73.2%)	94(26.8%)	.022
	실업고	207(81.2%)	48(18.8%)	
지역	대도시	506(76.1%)	159(23.9%)	.825
	대도시 외	389(75.5%)	126(24.5%)	
전체빈도(비율)		919(76.0)	290(24.0)	1209
누적비율		76.0	100.0	

<부록표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51(70.8%)	186(29.2%)	.037
	여자	373(65.2%)	199(34.8%)	
교급	중학교	434(72.0%)	169(28.0%)	.004
	고등학교	390(64.4%)	216(35.6%)	
계열	인문고	223(63.5%)	128(36.5%)	.620
	실업고	167(65.5%)	88(34.5%)	
지역	대도시	468(70.4%)	197(29.6%)	.037
	대도시 외	333(64.7%)	182(35.3%)	
전체빈도(비율)		824(68.2)	385(31.8)	1209
누적비율		68.2	100.0	

<부록표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20(50.2%)	317(49.8%)	.001
	여자	231(40.5%)	340(59.5%)	
교급	중학교	305(50.7%)	297(49.3%)	.000
	고등학교	246(40.6%)	360(59.4%)	
계열	인문고	133(37.9%)	218(62.1%)	.112
	실업고	113(44.3%)	142(55.7%)	
지역	대도시	322(48.5%)	342(51.5%)	.030
	대도시 외	217(42.1%)	298(57.9%)	
전체빈도(비율)		551(45.6)	657(54.4)	1208
누적비율		45.6	100.0	

<부록표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57(40.3%)	380(59.7%)	.005
	여자	186(32.6%)	385(67.4%)	
교급	중학교	256(42.5%)	346(57.5%)	.000
	고등학교	187(30.9%)	419(69.1%)	
계열	인문고	103(29.3%)	248(70.7%)	.345
	실업고	84(32.9%)	171(67.1%)	
지역	대도시	268(40.4%)	396(59.6%)	.002
	대도시 외	163(31.7%)	352(68.3%)	
전체빈도(비율)		443(36.7)	765(63.3)	1208
누적비율		36.7	100.0	

<부록표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97(46.7%)	339(53.3%)	.000
	여자	183(32.0%)	389(68.0%)	
교급	중학교	276(45.8%)	326(54.2%)	.000
	고등학교	204(33.7%)	402(66.3%)	
계열	인문고	116(33.0%)	235(67.0%)	.708
	실업고	88(34.5%)	167(65.5%)	
지역	대도시	289(43.5%)	375(56.5%)	.004
	대도시 외	182(35.3%)	333(64.7%)	
전체빈도(비율)		480(39.7)	728(60.3)	1208
누적비율		39.7	100.0	

<부록표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99(46.9%)	338(53.1%)	.001
	여자	216(37.8%)	355(62.2%)	
교급	중학교	317(52.7%)	285(47.3%)	.000
	고등학교	198(32.7%)	408(67.3%)	
계열	인문고	112(31.9%)	239(68.1%)	.638
	실업고	86(33.7%)	169(66.3%)	
지역	대도시	305(45.9%)	359(54.1%)	.008
	대도시 외	197(38.3%)	318(61.7%)	
전체빈도(비율)		515(42.6)	693(57.4)	1208
누적비율		42.6	100.0	

<부록표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9(53.2%)	298(46.8%)	.043
	여자	271(47.4%)	301(52.6%)	
교급	중학교	348(57.7%)	255(42.3%)	.000
	고등학교	262(43.2%)	344(56.8%)	
계열	인문고	149(42.5%)	202(57.5%)	.648
	실업고	113(44.3%)	142(55.7%)	
지역	대도시	339(51.0%)	326(49.0%)	.715
	대도시 외	257(49.9%)	258(50.1%)	
전체빈도(비율)		610(50.5)	599(49.5)	1209
누적비율		50.5	100.0	

<부록표 11-18>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0(73.8%)	167(26.2%)	.026
	여자	388(68.0%)	183(32.0%)	
교급	중학교	434(72.1%)	168(27.9%)	.416
	고등학교	424(70.0%)	182(30.0%)	
계열	인문고	235(67.0%)	116(33.0%)	.058
	실업고	189(74.1%)	66(25.9%)	
지역	대도시	482(72.6%)	182(27.4%)	.149
	대도시 외	354(68.7%)	161(31.3%)	
전체빈도(비율)		858(71.0)	350(29.0)	1208
누적비율		71.0	100.0	

<부록표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00(62.8%)	237(37.2%)	.099
	여자	332(58.1%)	239(41.9%)	
교급	중학교	370(61.5%)	232(38.5%)	.540
	고등학교	362(59.7%)	244(40.3%)	
계열	인문고	195(55.6%)	156(44.4%)	.014
	실업고	167(65.5%)	88(34.5%)	
지역	대도시	410(61.7%)	254(38.3%)	.311
	대도시 외	303(58.8%)	212(41.2%)	
전체빈도(비율)		732(60.6)	476(39.4)	1208
누적비율		60.6	100.0	

<부록표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29(67.3%)	208(32.7%)	.003
	여자	337(59.0%)	234(41.0%)	
교급	중학교	393(65.3%)	209(34.7%)	.179
	고등학교	373(61.6%)	233(38.4%)	
계열	인문고	217(61.8%)	134(38.2%)	.872
	실업고	156(61.2%)	99(38.8%)	
지역	대도시	419(63.1%)	245(36.9%)	.839
	대도시 외	322(62.5%)	193(37.5%)	
전체빈도(비율)		766(63.4)	442(36.6)	1208
누적비율		63.4	100.0	

<부록표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0(56.5%)	277(43.5%)	.002
	여자	273(47.7%)	299(52.3%)	
교급	중학교	341(56.6%)	262(43.4%)	.004
	고등학교	292(48.2%)	314(51.8%)	
계열	인문고	159(45.3%)	192(54.7%)	.096
	실업고	133(52.2%)	122(47.8%)	
지역	대도시	370(55.6%)	295(44.4%)	.011
	대도시 외	248(48.2%)	267(51.8%)	
전체빈도(비율)		633(52.4)	576(47.6)	1209
누적비율		52.4	100.0	

<부록표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01(47.3%)	336(52.7%)	.001
	여자	218(38.2%)	353(61.8%)	
교급	중학교	306(50.8%)	296(49.2%)	.000
	고등학교	213(35.1%)	393(64.9%)	
계열	인문고	126(35.9%)	225(64.1%)	.651
	실업고	87(34.1%)	168(65.9%)	
지역	대도시	304(45.8%)	360(54.2%)	.020
	대도시 외	201(39.0%)	314(61.0%)	
전체빈도(비율)		519(43.0)	689(57.0)	1208
누적비율		43.0	100.0	

<부록표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7(57.6%)	270(42.4%)	.209
	여자	309(54.0%)	263(46.0%)	
교급	중학교	358(59.4%)	245(40.6%)	.016
	고등학교	318(52.5%)	288(47.5%)	
계열	인문고	182(51.9%)	169(48.1%)	.719
	실업고	136(53.3%)	119(46.7%)	
지역	대도시	389(58.5%)	276(41.5%)	.051
	대도시 외	272(52.8%)	243(47.2%)	
전체빈도(비율)		676(55.9)	533(44.1)	1209
누적비율		55.9	100.0	

<부록표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학교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49(70.5%)	188(29.5%)	.209
	여자	384(67.1%)	188(32.9%)	
교급	중학교	423(70.1%)	180(29.9%)	.350
	고등학교	410(67.7%)	196(32.3%)	
계열	인문고	226(64.4%)	125(35.6%)	.044
	실업고	184(72.2%)	71(27.8%)	
지역	대도시	475(71.4%)	190(28.6%)	.046
	대도시 외	340(66.0%)	175(34.0%)	
전체빈도(비율)		833(68.9)	376(31.1)	1209
누적비율		68.9	100.0	

<부록표 7> 선거권은 몇 세부터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이상	유의도 (P)
성별	남자	77(12.2%)	40(6.3%)	182(28.8%)	95(15.0%)	162(25.6%)	77(12.2%)	.171
	여자	42(7.3%)	58(10.%)	146(25.4%)	84(14.6%)	194(33.8%)	50(8.7%)	
교급	중학교	108(18.0%)	58(9.7%)	185(30.9%)	73(12.2%)	126(21.0%)	49(8.2%)	.000
	고등학교	11(1.8%)	40(6.6%)	143(23.5%)	106(17.4%)	230(37.8%)	78(12.8%)	
계열	인문고	9(2.6%)	16(4.6%)	77(21.9%)	68(19.4%)	131(37.3%)	50(14.2%)	.183
	실업고	2(.8%)	24(9.3%)	66(25.7%)	38(14.8%)	99(38.5%)	28(10.9%)	
지역	대도시	67(10.1%)	58(8.7%)	184(27.8%)	98(14.86%)	191(28.8%)	65(9.8%)	.205
	대도시 외	46(8.9%)	38(7.4%)	140(27.2%)	77(15.0%)	158(30.7%)	56(10.9%)	
전체빈도(비율)		119(9.9)	98(8.1)	328(27.2)	179(14.8)	356(29.5)	127(10.5)	1207
누적비율		9.9	18.0	45.2	60.0	89.5	100.0	

<부록표 8-1>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7.4%)	177(27.7%)	250(39.2%)	164(25.7%)	.039
	여자	20(3.5%)	133(23.1%)	288(50.1%)	134(23.3%)	
교급	중학교	43(7.1%)	165(27.3%)	248(41.0%)	149(24.6%)	.046
	고등학교	24(3.9%)	145(23.8%)	290(47.7%)	149(24.5%)	
계열	인문고	15(4.3%)	84(23.9%)	170(48.4%)	82(23.4%)	.498
	실업고	9(3.5%)	61(23.7%)	120(46.7%)	67(26.1%)	
지역	대도시	43(6.4%)	161(24.1%)	316(47.3%)	148(22.2%)	.175
	대도시 외	23(4.5%)	138(26.7%)	213(41.3%)	142(27.5%)	
전체빈도(비율)		67(5.5)	310(25.6)	538(44.4)	298(24.6)	1213
누적비율		5.5	31.1	75.4	100.0	

<부록표 8-2>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팜플렛 등)을 받아본 적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7(4.2%)	138(21.6%)	243(38.1%)	230(36.1%)	.067
	여자	17(3.0%)	85(14.8%)	270(47.0%)	203(35.3%)	
교급	중학교	23(3.8%)	108(17.9%)	229(37.9%)	245(40.5%)	.035
	고등학교	21(3.5%)	115(18.9%)	284(46.7%)	188(30.9%)	
계열	인문고	10(2.8%)	62(17.7%)	160(45.6%)	119(33.9%)	.049
	실업고	11(4.3%)	53(20.6%)	124(48.2%)	69(26.8%)	
지역	대도시	30(4.5%)	134(20.1%)	290(43.4%)	214(32.0%)	.001
	대도시 외	12(2.3%)	82(15.9%)	215(41.7%)	207(40.1%)	
전체빈도(비율)		44(3.6)	223(18.4)	513(42.3)	433(35.7)	1213
누적비율		3.6	22.0	64.3	100.0	

<부록표 9-1> 나는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빈 인		배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38(6.0%)	75(11.8%)	211(33.1%)	314(49.2%)	.417
	여자	11(1.9%)	68(11.8%)	237(41.2%)	259(45.0%)	
교급	중학교	21(3.5%)	57(9.4%)	205(33.9%)	322(53.2%)	.000
	고등학교	28(4.6%)	86(14.1%)	243(40.0%)	251(41.3%)	
계열	인문고	19(5.4%)	61(17.4%)	128(36.5%)	143(40.7%)	.065
	실업고	9(3.5%)	25(9.7%)	115(44.7%)	108(42.0%)	
지역	대도시	25(3.7%)	70(10.5%)	270(40.4%)	303(45.4%)	.979
	대도시 외	22(4.3%)	70(13.6%)	168(32.6%)	256(49.6%)	
전체빈도(비율)		49(4.0)	143(11.8)	448(36.9)	573(47.2)	1213
누적비율		4.0	15.8	52.8	100.0	

<부록표 9-2> 나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번 인		배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5(3.9%)	72(11.3%)	223(35.0%)	318(49.8%)	.500
	여자	10(1.7%)	77(13.4%)	232(40.3%)	256(44.5%)	
교급	중학교	18(3.0%)	84(13.9%)	212(35.0%)	291(48.1%)	.660
	고등학교	17(2.8%)	65(10.7%)	243(40.0%)	283(46.5%)	
계열	인문고	11(3.1%)	35(10.0%)	138(39.3%)	167(47.6%)	.688
	실업고	6(2.3%)	30(11.7%)	105(40.9%)	116(45.1%)	
지역	대도시	21(3.1%)	88(13.2%)	256(38.3%)	303(45.4%)	.063
	대도시 외	14(2.7%)	53(10.3%)	190(36.8%)	259(50.2%)	
전체빈도(비율)		35(2.9)	149(12.3)	455(37.5)	574(47.3)	1213
누적비율		2.9	15.2	52.7	100.0	

<부록표 9-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변 인		배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35(5.5%)	83(13.0%)	219(34.3%)	301(47.2%)	.230
	여자	21(3.7%)	66(11.5%)	213(37.0%)	275(47.8%)	
교급	중학교	32(5.3%)	82(13.6%)	184(30.4%)	307(50.7%)	.792
	고등학교	24(3.9%)	67(11.0%)	248(40.8%)	269(44.2%)	
계열	인문고	19(5.4%)	43(12.3%)	140(39.9%)	149(42.5%)	.033
	실업고	5(1.9%)	24(9.3%)	108(42.0%)	120(46.7%)	
지역	대도시	25(3.7%)	71(10.6%)	263(39.4%)	309(46.3%)	.342
	대도시 외	29(5.6%)	73(14.1%)	162(31.4%)	252(48.8%)	
전체빈도(비율)		56(4.6)	149(12.3)	432(35.6)	576(47.5)	1213
누적비율		4.6	16.9	52.5	100.0	

<부록표 9-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7.4%)	116(18.2%)	247(38.8%)	227(35.6%)	.791
	여자	27(4.7%)	104(18.1%)	263(45.7%)	181(31.5%)	
교급	중학교	44(7.3%)	117(19.4%)	217(35.9%)	226(37.4%)	.944
	고등학교	30(4.9%)	103(16.9%)	293(48.2%)	182(29.9%)	
계열	인문고	18(5.1%)	74(21.1%)	161(45.9%)	98(27.9%)	.021
	실업고	12(4.7%)	29(11.3%)	132(51.4%)	84(32.7%)	
지역	대도시	50(7.5%)	117(17.5%)	284(42.6%)	216(32.4%)	.132
	대도시 외	22(4.3%)	98(19.0%)	215(41.7%)	181(35.1%)	
전체빈도(비율)		74(6.1)	220(18.2)	510(42.1)	408(33.7)	1212
누적비율		6.1	24.3	66.3	100.0	

<부록표 9-8>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73(11.5%)	119(18.7%)	236(37.0%)	209(32.8%)	.321
	여자	53(9.2%)	101(17.6%)	233(40.5%)	188(32.7%)	
교급	중학교	82(13.6%)	131(21.7%)	196(32.5%)	195(32.3%)	.000
	고등학교	44(7.2%)	89(14.6%)	273(44.9%)	202(33.2%)	
계열	인문고	18(5.1%)	39(11.1%)	172(49.0%)	122(34.8%)	.002
	실업고	26(10.1%)	50(19.5%)	101(39.3%)	80(31.1%)	
지역	대도시	72(10.8%)	142(21.3%)	246(36.9%)	207(31.0%)	.031
	대도시 외	53(10.3%)	74(14.3%)	207(40.1%)	182(35.3%)	
전체빈도(비율)		126(10.4)	220(18.2)	469(38.7)	397(32.8)	1212
누적비율		10.4	28.5	67.2	100.0	

<부록표 9-13> 나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9(7.7%)	70(11.1%)	144(22.7%)	370(58.5%)	.720
	여자	45(7.9%)	48(8.4%)	148(25.8%)	332(57.9%)	
교급	중학교	19(3.2%)	44(7.4%)	127(21.2%)	408(68.2%)	.000
	고등학교	75(12.3%)	74(12.2%)	165(27.1%)	294(48.4%)	
계열	인문고	63(17.9%)	52(14.8%)	87(24.8%)	149(42.5%)	.000
	실업고	12(4.7%)	22(8.6%)	78(30.4%)	145(56.4%)	
지역	대도시	26(3.9%)	57(8.6%)	179(27.0%)	400(60.4%)	.000
	대도시 외	66(12.8%)	60(11.7%)	103(20.0%)	286(55.5%)	
전체빈도(비율)		94(7.8)	118(9.8)	292(24.2)	702(58.2)	1206
누적비율		7.8	17.6	41.8	100.0	

<부록표 8-3>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49(23.4%)	295(46.4%)	130(20.4%)	62(9.7%)	.459
	여자	105(18.3%)	290(50.4%)	139(24.2%)	41(7.1%)	
교급	중학교	127(21.1%)	258(42.8%)	148(24.5%)	70(11.6%)	.001
	고등학교	127(20.9%)	327(53.8%)	121(19.9%)	33(5.4%)	
계열	인문고	76(21.7%)	189(53.8%)	71(20.2%)	15(4.3%)	.314
	실업고	51(19.8%)	138(53.7%)	50(19.5%)	18(7.0%)	
지역	대도시	128(19.2%)	323(48.5%)	144(21.6%)	71(10.7%)	.033
	대도시 외	116(22.5%)	248(48.1%)	121(23.4%)	31(6.0%)	
전체빈도(비율)		254(21.0)	585(48.3)	269(22.2)	103(8.5)	1211
누적비율		21.0	69.3	91.5	100.0	

<부록표 8-4>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53(24.0%)	254(39.8%)	170(26.6%)	81(9.6%)	.000
	여자	155(27.0%)	269(46.8%)	131(22.8%)	20(3.5%)	
교급	중학교	140(23.1%)	232(38.3%)	174(28.8%)	59(9.8%)	.000
	고등학교	168(27.6%)	291(47.9%)	127(20.9%)	22(3.6%)	
계열	인문고	79(22.5%)	170(48.4%)	88(25.1%)	14(4.0%)	.000
	실업고	89(34.6%)	121(47.1%)	39(15.2%)	8(3.1%)	
지역	대도시	167(25.0%)	296(44.3%)	150(22.5%)	55(8.2%)	.498
	대도시 외	136(26.4%)	215(41.7%)	140(27.1%)	25(4.8%)	
전체빈도(비율)		308(25.4)	523(43.1)	301(24.8)	81(6.7)	1213
누적비율		25.4	68.5	93.3	100.0	

<부록표 8-5> 현재 권리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94(30.5%)	225(35.3%)	134(21.0%)	84(13.2%)	.286
	여자	168(29.2%)	235(40.9%)	113(19.7%)	59(10.3%)	
교급	중학교	174(28.8%)	199(32.9%)	140(23.2%)	91(15.1%)	.000
	고등학교	188(30.9%)	261(42.9%)	107(17.6%)	52(8.6%)	
계열	인문고	94(26.8%)	159(45.3%)	62(17.7%)	36(10.3%)	.016
	실업고	94(36.6%)	102(39.7%)	45(17.5%)	16(6.2%)	
지역	대도시	208(31.2%)	249(37.3%)	138(20.7%)	72(10.8%)	.215
	대도시 외	145(28.1%)	202(39.1%)	99(19.2%)	70(13.6%)	
전체빈도(비율)		362(29.9)	460(38.0)	247(20.4)	143(11.8)	1212
누적비율		29.9	67.8	88.2	100.0	

<부록표 8-6> 현재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94(14.8%)	268(42.3%)	205(32.4%)	66(10.4%)	.317
	여자	72(12.5%)	277(48.3%)	185(32.2%)	40(7.0%)	
교급	중학교	77(12.9%)	232(38.7%)	216(36.1%)	74(12.4%)	.000
	고등학교	89(14.6%)	313(51.5%)	174(28.6%)	32(5.3%)	
계열	인문고	51(14.5%)	177(50.4%)	105(29.9%)	18(5.1%)	.669
	실업고	38(14.8%)	136(52.9%)	69(26.8%)	14(5.4%)	
지역	대도시	84(12.7%)	308(46.5%)	218(32.9%)	53(8.0%)	.848
	대도시 외	79(15.3%)	225(43.6%)	163(31.6%)	49(9.5%)	
전체빈도(비율)		166(13.8)	545(45.2)	390(32.3)	106(8.8)	1207
누적비율		13.8	58.9	91.2	100.0	

<부록표 8-7>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47(7.4%)	98(15.4%)	174(27.3%)	319(50.0%)	.001
	여자	21(3.7%)	53(9.2%)	192(33.4%)	309(53.7%)	
교급	중학교	45(7.4%)	89(14.7%)	192(31.7%)	279(46.1%)	.000
	고등학교	23(3.8%)	62(10.2%)	174(28.6%)	349(57.4%)	
계열	인문고	12(3.4%)	38(10.8%)	98(27.9%)	203(57.8%)	.852
	실업고	11(4.3%)	24(9.3%)	76(29.6%)	146(56.8%)	
지역	대도시	36(5.4%)	85(12.7%)	211(31.6%)	336(50.3%)	.395
	대도시 외	28(5.4%)	64(12.4%)	143(27.7%)	281(54.5%)	
전체빈도(비율)		68(5.6)	151(12.4)	366(30.2)	628(51.8)	1213
누적비율		5.6	18.1	48.2	100.0	

<부록표 8-8> 여성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신장되어야 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50(23.6%)	302(47.6%)	115(18.1%)	68(10.7%)	.000
	여자	360(62.6%)	175(30.4%)	22(3.8%)	18(3.1%)	
교급	중학교	252(41.9%)	232(38.5%)	68(11.3%)	50(8.3%)	.301
	고등학교	258(42.4%)	245(40.3%)	69(11.3%)	36(5.9%)	
계열	인문고	134(38.2%)	147(41.9%)	47(13.4%)	23(6.6%)	.011
	실업고	124(48.2%)	98(38.1%)	22(8.6%)	13(5.1%)	
지역	대도시	252(37.7%)	295(44.2%)	76(11.4%)	45(6.7%)	.159
	대도시 외	244(47.6%)	170(33.1%)	58(11.3%)	41(8.0%)	
전체빈도(비율)		510(42.1)	477(39.4)	137(11.3)	86(7.1)	1210
누적비율		42.1	81.6	92.9	100.0	

<부록표 8-9> 외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57(8.9%)	110(17.3%)	264(41.4%)	206(32.3%)	.280
	여자	26(4.5%)	106(18.5%)	268(46.8%)	173(30.2%)	
교급	중학교	45(7.5%)	104(17.2%)	249(41.3%)	205(34.0%)	.412
	고등학교	38(6.3%)	112(18.5%)	283(46.6%)	174(28.7%)	
계열	인문고	25(7.1%)	62(17.7%)	163(46.6%)	100(28.6%)	.705
	실업고	13(5.1%)	50(19.5%)	120(46.7%)	74(28.8%)	
지역	대도시	47(7.0%)	123(18.4%)	294(44.1%)	203(30.4%)	.329
	대도시 외	34(6.6%)	85(16.5%)	227(44.2%)	168(32.7%)	
전체빈도(비율)		83(6.9)	216(17.9)	532(44.0)	379(31.3)	1210
누적비율		6.9	24.7	68.7	100.0	

<부록표 9-7>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00(15.7%)	146(22.9%)	189(29.7%)	202(31.7%)	.049
	여자	66(11.5%)	195(33.9%)	183(31.8%)	131(22.8%)	
교급	중학교	96(15.9%)	162(26.8%)	154(25.5%)	192(31.8%)	.673
	고등학교	70(11.5%)	179(29.4%)	218(35.9%)	141(23.2%)	
계열	인문고	35(10.0%)	93(26.5%)	131(37.3%)	92(26.2%)	.006
	실업고	35(13.6%)	86(33.5%)	87(33.9%)	49(19.1%)	
지역	대도시	97(14.5%)	196(29.4%)	199(29.8%)	175(26.2%)	.169
	대도시 외	68(13.2%)	139(26.9%)	158(30.6%)	151(29.3%)	
전체빈도(비율)		166(13.7)	341(28.1)	372(30.7)	333(27.5)	1212
누적비율		13.7	41.8	72.5	100.0	

<부록표 9-4> 청소년은 자기에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271(42.5%)	266(41.8%)	66(10.4%)	34(5.3%)	.070
	여자	203(35.3%)	276(48.0%)	63(11.0%)	33(5.7%)	
교급	중학교	217(35.9%)	273(45.2%)	70(11.6%)	44(7.3%)	.001
	고등학교	257(42.3%)	269(44.2%)	59(9.7%)	23(3.8%)	
계열	인문고	164(46.7%)	148(42.2%)	23(6.6%)	16(4.6%)	.025
	실업고	93(36.2%)	121(47.1%)	36(14.0%)	7(2.7%)	
지역	대도시	240(36.0%)	309(46.3%)	80(12.0%)	38(5.7%)	.012
	대도시 외	225(43.6%)	221(42.8%)	43(8.3%)	27(5.2%)	
전체빈도(비율)		474(39.1)	542(44.7)	129(10.6)	67(5.5)	1212
누적비율		39.1	83.8	94.5	100.0	

<부록표 9-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82(12.9%)	233(36.6%)	190(29.8%)	132(20.7%)	.979
	여자	52(9.0%)	234(40.7%)	191(33.2%)	98(17.0%)	
교급	중학교	83(13.7%)	214(35.4%)	192(31.8%)	115(19.0%)	.405
	고등학교	51(8.4%)	253(41.6%)	189(31.1%)	115(18.9%)	
계열	인문고	30(8.5%)	142(40.5%)	117(33.3%)	62(17.7%)	.894
	실업고	21(8.2%)	111(43.2%)	72(28.0%)	53(20.6%)	
지역	대도시	81(12.1%)	262(39.3%)	203(30.4%)	121(18.1%)	.043
	대도시 외	48(9.3%)	189(36.6%)	172(33.3%)	107(20.7%)	
전체빈도(비율)		134(11.1)	467(38.5)	381(31.4)	230(19.0)	1212
누적비율		11.1	49.6	81.0	100.0	

<부록표 9-9>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95(14.9%)	215(33.8%)	237(37.2%)	90(14.1%)	.576
	여자	68(11.8%)	200(34.8%)	239(41.6%)	68(11.8%)	
교급	중학교	88(14.6%)	206(34.1%)	220(36.4%)	90(14.9%)	.924
	고등학교	75(12.3%)	209(34.4%)	256(42.1%)	68(11.2%)	
계열	인문고	43(12.3%)	126(35.9%)	146(41.6%)	36(10.3%)	.439
	실업고	32(12.5%)	83(32.3%)	110(42.8%)	32(12.5%)	
지역	대도시	86(12.9%)	245(36.7%)	251(37.6%)	85(12.7%)	.457
	대도시 외	72(14.0%)	161(31.2%)	215(41.7%)	68(13.2%)	
전체빈도(비율)		163(13.4)	415(34.2)	476(39.3)	158(13.0)	1212
누적비율		13.4	47.7	87.0	100.0	

<부록표 9-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78(28.0%)	271(42.6%)	136(21.4%)	51(8.0%)	.016
	여자	159(27.7%)	301(52.3%)	85(14.8%)	30(5.2%)	
교급	중학교	158(26.2%)	270(44.7%)	124(20.5%)	52(8.6%)	.001
	고등학교	179(29.5%)	302(49.8%)	97(16.0%)	29(4.8%)	
계열	인문고	109(31.1%)	174(49.6%)	55(15.7%)	13(3.7%)	.149
	실업고	70(27.3%)	128(50.0%)	42(16.4%)	16(6.3%)	
지역	대도시	165(24.8%)	307(46.1%)	144(21.6%)	50(7.5%)	.000
	대도시 외	161(31.2%)	254(49.2%)	74(14.3%)	27(5.2%)	
전체빈도(비율)		337(27.8)	572(47.2)	221(18.2)	81(6.7)	1211
누적비율		27.8	75.1	93.3	100.0	

<부록표 9-11>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77(12.1%)	227(35.6%)	210(33.0%)	123(19.3%)	.666
	여자	64(11.1%)	216(37.6%)	197(34.3%)	98(17.0%)	
교급	중학교	69(11.4%)	192(31.8%)	202(33.4%)	141(23.3%)	.000
	고등학교	72(11.8%)	251(41.3%)	205(33.7%)	80(13.2%)	
계열	인문고	44(12.5%)	139(39.6%)	117(33.3%)	51(14.5%)	.580
	실업고	28(10.9%)	112(43.6%)	88(34.2%)	29(11.3%)	
지역	대도시	73(10.9%)	242(36.3%)	231(34.6%)	121(18.1%)	.553
	대도시 외	63(12.2%)	191(37.0%)	168(32.6%)	94(18.2%)	
전체빈도(비율)		141(11.6)	443(36.6)	407(33.6)	221(18.2)	1212
누적비율		11.6	48.2	81.8	100.0	

<부록표 9-12>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변 인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안함	유의도 (P)
성별	남자	104(16.3%)	246(38.6%)	214(33.6%)	73(11.5%)	.889
	여자	68(11.8%)	245(42.6%)	221(38.4%)	41(7.1%)	
교급	중학교	100(16.6%)	240(39.7%)	201(33.3%)	63(10.4%)	.229
	고등학교	72(11.8%)	251(41.3%)	234(38.5%)	51(8.4%)	
계열	인문고	36(10.3%)	156(44.4%)	132(37.6%)	27(7.7%)	.807
	실업고	36(14.0%)	95(37.0%)	102(39.7%)	24(9.3%)	
지역	대도시	100(15.0%)	268(40.2%)	231(34.6%)	68(10.2%)	.986
	대도시 외	68(13.2%)	216(41.9%)	189(36.6%)	43(8.3%)	
전체빈도(비율)		172(14.2)	491(40.5)	435(35.9)	114(9.4)	1212
누적비율		14.2	54.7	90.6	100.0	

<부록표 11-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08(32.7%)	428(67.3%)	.000
	여자	129(22.6%)	443(77.4%)	
교급	중학교	196(32.5%)	407(67.5%)	.000
	고등학교	141(23.3%)	464(76.7%)	
계열	인문고	81(23.1%)	269(76.9%)	.912
	실업고	60(23.5%)	195(76.5%)	
지역	대도시	209(31.5%)	455(68.5%)	.002
	대도시 외	121(23.5%)	394(76.5%)	
전체빈도(비율)		337(27.9)	871(72.1)	1208
누적비율		27.9	100.0	

<부록표 11-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6(52.9%)	299(47.1%)	.233
	여자	283(49.5%)	289(50.5%)	
교급	중학교	326(54.2%)	276(45.8%)	.047
	고등학교	293(48.4%)	312(51.6%)	
계열	인문고	171(48.9%)	179(51.1%)	.806
	실업고	122(47.8%)	133(52.2%)	
지역	대도시	348(52.5%)	315(47.5%)	.416
	대도시 외	258(50.1%)	257(49.9%)	
전체빈도(비율)		619(51.3)	588(48.7)	1207
누적비율		51.3	100.0	

<부록표 11-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85(60.5%)	251(39.5%)	.106
	여자	320(55.9%)	252(44.1%)	
교급	중학교	377(62.5%)	226(37.5%)	.003
	고등학교	328(54.2%)	277(45.8%)	
계열	인문고	194(55.4%)	156(44.6%)	.484
	실업고	134(52.5%)	121(47.5%)	
지역	대도시	381(57.4%)	283(42.6%)	.482
	대도시 외	306(59.4%)	209(40.6%)	
전체빈도(비율)		705(58.4)	503(41.6)	1208
누적비율		58.4	100.0	

<부록표 11-4>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울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84(60.4%)	252(39.6%)	.035
	여자	311(54.4%)	261(45.6%)	
교급	중학교	350(58.0%)	253(42.0%)	.721
	고등학교	345(57.0%)	260(43.0%)	
계열	인문고	200(57.1%)	150(42.9%)	.945
	실업고	145(56.9%)	110(43.1%)	
지역	대도시	384(57.8%)	280(42.2%)	.956
	대도시 외	297(57.7%)	218(42.3%)	
전체빈도(비율)		695(57.5)	513(42.5)	1208
누적비율		57.5	100.0	

<부록표 11-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증됨	존증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95(62.2%)	240(37.8%)	.009
	여자	313(54.8%)	258(45.2%)	
교육	중학교	361(60.1%)	240(39.9%)	.339
	고등학교	347(57.4%)	258(42.6%)	
계열	인문고	203(58.0%)	147(42.0%)	.708
	실업고	144(56.5%)	111(43.5%)	
지역	대도시	396(59.7%)	267(40.3%)	.382
	대도시 외	294(57.2%)	220(42.8%)	
전체빈도(비율)		708(58.7)	498(41.3)	1206
누적비율		58.7	100.0	

<부록표 11-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증됨	존증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48(54.9%)	286(45.1%)	.007
	여자	269(47.1%)	302(52.9%)	
교육	중학교	316(52.6%)	285(47.4%)	.341
	고등학교	301(49.8%)	303(50.2%)	
계열	인문고	172(49.3%)	177(50.7%)	.752
	실업고	129(50.6%)	126(49.4%)	
지역	대도시	344(51.9%)	319(48.1%)	.534
	대도시 외	257(50.1%)	256(49.9%)	
전체빈도(비율)		617(51.2)	588(48.8)	1205
누적비율		51.2	100.0	

<부록표 11-2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증됨	존증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12(64.8%)	224(35.2%)	.601
	여자	361(63.3%)	209(36.7%)	
교육	중학교	398(66.2%)	203(33.8%)	.125
	고등학교	375(62.0%)	230(38.0%)	
계열	인문고	211(60.3%)	139(39.7%)	.314
	실업고	164(64.3%)	91(35.7%)	
지역	대도시	432(65.3%)	230(34.7%)	.577
	대도시 외	328(63.7%)	187(36.3%)	
전체빈도(비율)		773(64.1)	433(35.9)	1206
누적비율		64.1	100.0	

<부록표 11-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0(56.6%)	276(43.4%)	.000
	여자	251(44.0%)	320(56.0%)	
교급	중학교	329(54.7%)	273(45.3%)	.005
	고등학교	282(46.6%)	323(53.4%)	
계열	인문고	149(42.6%)	201(57.4%)	.020
	실업고	133(52.2%)	122(47.8%)	
지역	대도시	355(53.5%)	308(46.5%)	.022
	대도시 외	241(46.8%)	274(53.2%)	
전체빈도(비율)		611(50.6)	596(49.4)	1207
누적비율		50.6	100.0	

<부록표 11-9>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른 처벌(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5(52.8%)	299(47.2%)	.016
	여자	262(45.9%)	309(54.1%)	
교급	중학교	321(53.4%)	280(46.6%)	.007
	고등학교	276(45.7%)	328(54.3%)	
계열	인문고	159(45.6%)	190(54.4%)	.937
	실업고	117(45.9%)	138(54.1%)	
지역	대도시	341(51.6%)	320(48.4%)	.152
	대도시 외	244(47.4%)	271(52.6%)	
전체빈도(비율)		597(49.5)	608(50.5)	1205
누적비율		49.5	100.0	

<부록표 11-10> 악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8(57.9%)	268(42.1%)	.001
	여자	277(48.6%)	293(51.4%)	
교급	중학교	344(57.2%)	257(42.8%)	.009
	고등학교	301(49.8%)	304(50.2%)	
계열	인문고	179(51.1%)	171(48.9%)	.424
	실업고	122(47.8%)	133(52.2%)	
지역	대도시	368(55.6%)	294(44.4%)	.082
	대도시 외	260(50.5%)	255(49.5%)	
전체빈도(비율)		645(53.5)	561(46.5)	1206
누적비율		53.5	100.0	

<부록표 11-11>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43(53.9%)	293(46.1%)	.034
	여자	273(47.8%)	298(52.2%)	
교급	중학교	347(57.6%)	255(42.4%)	.000
	고등학교	269(44.5%)	336(55.5%)	
계열	인문고	149(42.6%)	201(57.4%)	.273
	실업고	120(47.1%)	135(52.9%)	
지역	대도시	353(53.2%)	310(46.8%)	.083
	대도시 외	248(48.2%)	267(51.8%)	
전체빈도(비율)		616(51.0)	591(49.0)	1207
누적비율		51.0	100.0	

<부록표 11-12>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00(62.9%)	236(37.1%)	.345
	여자	344(60.2%)	227(39.8%)	
교급	중학교	371(61.6%)	231(38.4%)	.993
	고등학교	373(61.7%)	232(38.3%)	
계열	인문고	205(58.6%)	145(41.4%)	.068
	실업고	168(65.9%)	87(34.1%)	
지역	대도시	418(63.0%)	245(37.0%)	.257
	대도시 외	308(59.8%)	207(40.2%)	
전체빈도(비율)		744(61.6)	463(38.4)	1207
누적비율		61.6	100.0	

<부록표 11-13>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97(62.5%)	238(37.5%)	.063
	여자	327(57.3%)	244(42.7%)	
교급	중학교	386(64.1%)	216(35.9%)	.004
	고등학교	338(56.0%)	266(44.0%)	
계열	인문고	185(53.0%)	164(47.0%)	.088
	실업고	153(60.0%)	102(40.0%)	
지역	대도시	420(63.3%)	243(36.7%)	.009
	대도시 외	287(55.8%)	227(44.2%)	
전체빈도(비율)		724(60.0)	482(40.0)	1206
누적비율		60.0	100.0	

<부록표 11-14>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08(48.4%)	328(51.6%)	.000
	여자	202(35.4%)	369(64.6%)	
교급	중학교	282(46.8%)	320(53.2%)	.001
	고등학교	228(37.7%)	377(62.3%)	
계열	인문고	129(36.9%)	221(63.1%)	.623
	실업고	99(38.8%)	156(61.2%)	
지역	대도시	301(45.4%)	362(54.6%)	.011
	대도시 외	196(38.1%)	319(61.9%)	
전체빈도(비율)		510(42.3)	697(57.7)	1207
누적비율		42.3	100.0	

<부록표 11-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88(45.3%)	348(54.7%)	.002
	여자	210(36.7%)	362(63.3%)	
교급	중학교	276(45.8%)	327(54.2%)	.001
	고등학교	222(36.7%)	383(63.3%)	
계열	인문고	124(35.4%)	226(64.6%)	.450
	실업고	98(38.4%)	157(61.6%)	
지역	대도시	299(45.0%)	365(55.0%)	.003
	대도시 외	188(36.5%)	327(63.5%)	
전체빈도(비율)		498(41.2)	710(58.8)	1208
누적비율		41.2	100.0	

<부록표 11-7>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277(43.6%)	358(56.4%)	.005
	여자	204(35.7%)	367(64.3%)	
교급	중학교	268(44.6%)	333(55.4%)	.001
	고등학교	213(35.2%)	392(64.8%)	
계열	인문고	118(33.7%)	232(66.3%)	.369
	실업고	95(37.3%)	160(62.7%)	
지역	대도시	294(44.4%)	368(55.6%)	.001
	대도시 외	180(35.0%)	335(65.0%)	
전체빈도(비율)		481(39.9)	725(60.1)	1206
누적비율		39.9	100.0	

<부록표 11-16>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사회에서)

번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85(60.5%)	251(39.5%)	.005
	여자	300(52.4%)	272(47.6%)	
교급	중학교	371(61.5%)	232(38.5%)	.001
	고등학교	314(51.9%)	291(48.1%)	
제열	인문고	183(52.3%)	167(47.7%)	.825
	실업고	131(51.4%)	124(48.6%)	
지역	대도시	394(59.3%)	270(40.7%)	.065
	대도시 외	278(54.0%)	237(46.0%)	
전체빈도(비율)		685(56.7)	523(43.3)	1208
누적비율		56.7	100.0	

<부록표 11-17>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사회에서)

번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97(60.9%)	248(39.1%)	.577
	여자	339(59.4%)	232(40.6%)	
교급	중학교	383(63.7%)	218(36.3%)	.013
	고등학교	343(55.7%)	232(43.3%)	
제열	인문고	194(55.4%)	153(44.6%)	.463
	실업고	148(58.4%)	103(41.6%)	
지역	대도시	417(63.0%)	245(37.0%)	.017
	대도시 외	289(56.1%)	226(43.9%)	
전체빈도(비율)		726(60.2)	480(39.8)	1206
누적비율		60.2	100.0	

<부록표 11-18>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사회에서)

번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44(69.8%)	192(30.2%)	.030
	여자	385(63.9%)	206(36.1%)	
교급	중학교	417(69.3%)	185(30.7%)	.098
	고등학교	392(64.8%)	213(35.2%)	
제열	인문고	229(65.4%)	121(34.6%)	.702
	실업고	163(63.9%)	92(36.1%)	
지역	대도시	448(67.6%)	215(32.4%)	.623
	대도시 외	341(66.2%)	174(33.8%)	
전체빈도(비율)		809(67.0)	393(33.0)	1207
누적비율		67.0	100.0	

<부록표 11-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8(58.0%)	267(42.0%)	.018
	여자	292(51.1%)	279(48.9%)	
교육	중학교	335(55.6%)	267(44.4%)	.521
	고등학교	325(53.8%)	279(46.2%)	
계열	인문고	180(51.6%)	169(48.4%)	.199
	실업고	145(56.9%)	110(43.1%)	
지역	대도시	384(57.9%)	279(42.1%)	.010
	대도시 외	259(50.4%)	255(49.6%)	
전체빈도(비율)		660(54.7)	546(45.3)	1206
누적비율		54.7	100.0	

<부록표 11-20>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64(57.2%)	272(42.8%)	.109
	여자	300(52.6%)	270(47.4%)	
교육	중학교	357(59.4%)	244(40.6%)	.002
	고등학교	307(50.7%)	298(49.3%)	
계열	인문고	178(50.9%)	172(49.1%)	.948
	실업고	129(50.6%)	126(49.4%)	
지역	대도시	361(54.4%)	302(45.6%)	.888
	대도시 외	282(54.9%)	232(45.1%)	
전체빈도(비율)		664(55.1)	542(44.9)	1206
누적비율		55.1	100.0	

<부록표 11-21> 올바른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33(52.4%)	303(47.6%)	.115
	여자	273(47.8%)	298(52.2%)	
교육	중학교	330(54.8%)	272(45.2%)	.001
	고등학교	276(45.6%)	329(54.4%)	
계열	인문고	150(42.9%)	200(57.1%)	.110
	실업고	126(49.4%)	129(50.6%)	
지역	대도시	362(54.6%)	301(45.4%)	.001
	대도시 외	230(44.7%)	285(55.3%)	
전체빈도(비율)		606(50.2)	601(49.8)	1207
누적비율		50.2	100.0	

<부록표 11-2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03(47.6%)	333(52.4%)	.017
	여자	233(40.8%)	338(59.2%)	
교급	중학교	307(51.0%)	295(49.0%)	.000
	고등학교	229(37.9%)	376(62.1%)	
계열	인문고	133(38.0%)	217(62.0%)	.930
	실업고	96(37.6%)	159(62.4%)	
지역	대도시	316(47.7%)	347(52.3%)	.010
	대도시 외	207(40.2%)	308(59.8%)	
전체빈도(비율)		536(44.4)	671(55.6)	1207
누적비율		44.4	100.0	

<부록표 11-23>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382(60.1%)	254(39.9%)	.690
	여자	350(61.2%)	222(38.8%)	
교급	중학교	379(62.9%)	224(37.1%)	.109
	고등학교	353(58.3%)	252(41.7%)	
계열	인문고	203(58.0%)	147(42.0%)	.840
	실업고	150(58.8%)	105(41.2%)	
지역	대도시	409(61.6%)	255(38.4%)	.448
	대도시 외	306(59.4%)	209(40.6%)	
전체빈도(비율)		732(60.6)	476(39.4)	1208
누적비율		60.6	100.0	

<부록표 11-2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사회에서)

변 인		존중됨	존중안됨	유의도 (P)
성별	남자	416(65.4%)	220(34.6%)	.585
	여자	382(66.9%)	189(33.1%)	
교급	중학교	418(69.4%)	184(30.6%)	.015
	고등학교	380(62.8%)	225(37.2%)	
계열	인문고	212(60.6%)	138(39.4%)	.183
	실업고	168(65.9%)	87(34.1%)	
지역	대도시	444(67.0%)	219(33.0%)	.535
	대도시 외	336(65.2%)	179(34.8%)	
전체빈도(비율)		798(66.1)	409(33.9)	1207
누적비율		66.1	100.0	

<부록표 10> 청소년 권리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 인		청소년의 지식 및 능력부족	성인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입시제도 과도한 학습과제	성인중심적 사고	법·제도 장치 부족	유의도 (P)
성별	남자	83(13.6%)	69(11.3%)	142(23.2%)	256(41.8%)	62(10.1%)	.296
	여자	71(12.7%)	64(11.4%)	125(22.3%)	220(39.3%)	80(14.3%)	
교급	중학교	98(16.8%)	61(10.5%)	132(22.6%)	209(35.8%)	83(14.2%)	.049
	고등학교	56(9.5%)	72(12.2%)	135(22.9%)	267(45.3%)	59(10.0%)	
계열	인문고	31(9.2%)	49(14.5%)	93(27.5%)	143(42.3%)	22(6.5%)	.003
	실업고	25(10.0%)	23(9.2%)	42(16.7%)	124(49.4%)	37(14.7%)	
지역	대도시	94(14.6%)	75(11.6%)	134(20.7%)	263(40.7%)	80(12.4%)	.377
	대도시 외	55(11.0%)	56(11.2%)	124(24.9%)	205(41.2%)	58(11.6%)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154(13.1)	133(11.3)	267(22.8)	476(40.6)	142(12.1)	1172
		13.1	24.5	47.3	87.9	100.0	

<부록표 12-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93(46.1%)	216(34.0%)	74(11.6%)	53(8.3%)	.588
	여자	240(41.7%)	223(38.8%)	73(12.7%)	39(6.8%)	
교급	중학교	273(45.3%)	190(31.5%)	77(12.8%)	63(10.4%)	.072
	고등학교	260(42.8%)	249(41.0%)	70(11.5%)	29(4.8%)	
계열	인문고	146(41.6%)	146(41.6%)	43(12.3%)	16(4.6%)	.607
	실업고	114(44.4%)	103(40.1%)	27(10.5%)	13(5.1%)	
지역	대도시	278(41.7%)	245(36.8%)	90(13.5%)	53(8.0%)	.068
	대도시 외	243(47.1%)	183(35.5%)	54(10.5%)	36(7.0%)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533(44.0)	439(36.3)	147(12.1)	92(7.6)	1211
		44.0	80.3	92.4	100.0	

<부록표 12-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67(42.0%)	239(37.6%)	88(13.8%)	42(6.6%)	.220
	여자	259(45.0%)	211(36.7%)	76(13.2%)	29(5.0%)	
교급	중학교	267(44.3%)	197(32.7%)	95(15.8%)	44(7.3%)	.122
	고등학교	259(42.6%)	253(41.6%)	69(11.3%)	27(4.4%)	
계열	인문고	143(40.7%)	158(45.0%)	38(10.8%)	12(3.4%)	.803
	실업고	116(45.1%)	95(37.0%)	31(12.1%)	15(5.8%)	
지역	대도시	282(42.3%)	240(36.0%)	104(15.6%)	40(6.0%)	.175
	대도시 외	232(45.0%)	197(38.2%)	57(11.0%)	30(5.8%)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526(43.4)	450(37.2)	164(13.5)	71(5.9)	1211
		43.4	80.6	94.1	100.0	

<부록표 12-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93(30.3%)	220(34.6%)	152(23.9%)	71(11.2%)	.048
	여자	184(32.0%)	224(39.0%)	125(21.7%)	42(7.3%)	
교급	중학교	197(32.7%)	195(32.3%)	144(23.9%)	67(11.1%)	.331
	고등학교	180(29.6%)	249(41.0%)	133(21.9%)	46(7.6%)	
계열	인문고	100(28.5%)	149(42.5%)	80(22.6%)	22(6.3%)	.857
	실업고	80(31.1%)	100(38.9%)	53(20.6%)	24(9.3%)	
지역	대도시	215(32.3%)	234(35.1%)	155(23.3%)	62(9.3%)	.712
	대도시 외	155(30.0%)	197(38.2%)	116(22.5%)	48(9.3%)	
전체빈도(비율)		377(31.1)	444(36.7)	277(22.9)	113(9.3)	1211
누적비율		31.1	67.8	90.7	100.0	

<부록표 12-25>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65(29.2%)	259(40.7%)	134(21.1%)	57(9.0%)	.064
	여자	145(25.2%)	225(39.1%)	155(27.0%)	50(8.7%)	
교급	중학교	182(30.3%)	222(36.9%)	142(23.6%)	55(9.2%)	.259
	고등학교	148(24.3%)	231(32.9%)	147(24.2%)	52(8.6%)	
계열	인문고	90(25.3%)	157(44.7%)	74(21.1%)	30(8.5%)	.156
	실업고	59(22.3%)	104(40.5%)	73(28.4%)	22(8.6%)	
지역	대도시	185(28.5%)	255(38.4%)	166(25.0%)	54(8.1%)	.368
	대도시 외	133(25.6%)	214(41.5%)	117(22.7%)	52(10.1%)	
전체빈도(비율)		330(27.3)	483(40.0)	289(23.9)	107(8.9)	1209
누적비율		27.3	67.2	91.1	100.0	

<부록표 12-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37(37.4%)	220(34.7%)	117(18.5%)	60(9.5%)	.066
	여자	176(30.5%)	226(39.3%)	117(20.3%)	56(9.7%)	
교급	중학교	234(38.9%)	192(31.9%)	101(16.3%)	74(12.3%)	.339
	고등학교	179(28.4%)	254(41.3%)	133(21.9%)	42(6.9%)	
계열	인문고	104(29.6%)	159(45.3%)	67(19.1%)	21(6.0%)	.117
	실업고	75(29.2%)	95(37.0%)	66(25.7%)	21(8.2%)	
지역	대도시	223(33.6%)	231(34.8%)	143(21.9%)	67(10.1%)	.271
	대도시 외	178(34.5%)	202(39.1%)	89(17.2%)	47(9.1%)	
전체빈도(비율)		413(34.2)	446(36.9)	234(19.4)	116(9.6)	1209
누적비율		34.2	71.1	90.4	100.0	

<부록표 12-1>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82(28.6%)	206(32.4%)	166(26.1%)	82(12.9%)	.000
	여자	116(20.2%)	182(31.8%)	176(30.7%)	99(17.3%)	
교급	중학교	172(28.6%)	184(30.6%)	154(25.6%)	91(15.1%)	.031
	고등학교	126(20.7%)	204(33.6%)	188(30.9%)	90(14.8%)	
계열	인문고	87(24.8%)	121(34.5%)	100(28.5%)	43(12.3%)	.001
	실업고	39(15.2%)	83(32.3%)	88(34.2%)	47(18.3%)	
지역	대도시	168(25.3%)	211(31.7%)	190(28.6%)	96(14.4%)	.686
	대도시 외	122(23.7%)	171(33.2%)	144(28.0%)	78(15.1%)	
전체빈도(비율)		298(24.6)	388(32.1)	342(28.3)	181(15.0)	1209
누적비율		24.6	56.7	85.0	100.0	

<부록표 12-2>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54(24.2%)	257(40.3%)	162(25.4%)	64(10.0%)	.001
	여자	102(17.7%)	206(35.8%)	213(37.0%)	54(9.4%)	
교급	중학교	146(24.2%)	218(36.1%)	175(29.0%)	65(10.8%)	.229
	고등학교	110(18.1%)	245(40.3%)	200(32.9%)	53(8.7%)	
계열	인문고	78(22.2%)	149(42.5%)	97(27.6%)	27(7.7%)	.000
	실업고	32(12.5%)	96(37.4%)	103(40.1%)	26(10.1%)	
지역	대도시	143(21.4%)	248(37.2%)	215(32.2%)	61(9.1%)	.933
	대도시 외	108(20.9%)	206(39.9%)	150(29.1%)	52(10.1%)	
전체빈도(비율)		256(21.1)	463(38.2)	375(30.9)	118(9.7)	1212
누적비율		21.1	59.3	90.3	100.0	

<부록표 12-3> 학급당 인원 감축(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43(22.5%)	180(28.3%)	220(34.6%)	93(14.6%)	.406
	여자	103(17.9%)	174(30.3%)	231(40.2%)	67(11.7%)	
교급	중학교	127(21.0%)	151(25.0%)	227(37.6%)	99(16.4%)	.036
	고등학교	119(19.6%)	203(33.4%)	224(36.9%)	61(10.0%)	
계열	인문고	79(22.6%)	114(32.6%)	121(34.6%)	36(10.3%)	.128
	실업고	40(15.6%)	89(34.6%)	103(40.1%)	25(9.7%)	
지역	대도시	135(20.3%)	183(27.5%)	262(39.3%)	86(12.9%)	.564
	대도시 외	105(20.3%)	164(31.8%)	178(34.1%)	71(13.8%)	
전체빈도(비율)		248(20.3)	354(29.2)	451(37.2)	160(13.2)	1211
누적비율		20.3	49.5	86.8	100.0	

<부록표 12-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65(25.9%)	174(27.3%)	188(29.5%)	110(17.3%)	.079
	여자	111(19.3%)	180(31.3%)	180(31.3%)	104(18.1%)	
교급	중학교	167(27.6%)	152(25.2%)	178(29.5%)	107(17.7%)	.048
	고등학교	109(17.9%)	202(33.2%)	190(31.3%)	107(17.6%)	
계열	인문고	61(17.4%)	122(34.8%)	112(31.9%)	56(16.0%)	.541
	실업고	48(18.7%)	80(31.1%)	78(30.4%)	51(19.0%)	
지역	대도시	161(24.1%)	197(29.5%)	192(28.8%)	117(17.5%)	.180
	대도시 외	109(21.1%)	147(28.5%)	166(32.2%)	94(18.2%)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276(22.8)	354(29.2)	368(30.4)	214(17.7)	1212
		22.8	52.0	82.3	100.0	

<부록표 12-5> 교칙 및 규칙의 완화(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47(23.1%)	252(39.6%)	153(24.1%)	84(13.2%)	.006
	여자	93(16.2%)	227(39.5%)	175(30.4%)	80(13.9%)	
교급	중학교	142(23.5%)	225(37.3%)	155(25.7%)	81(13.4%)	.043
	고등학교	98(16.1%)	254(41.8%)	173(28.5%)	83(13.7%)	
계열	인문고	62(17.7%)	155(44.2%)	96(27.4%)	38(10.8%)	.009
	실업고	36(14.0%)	99(38.5%)	77(30.0%)	45(17.5%)	
지역	대도시	126(18.9%)	249(37.4%)	192(28.8%)	99(14.9%)	.045
	대도시 외	110(21.3%)	214(41.5%)	129(25.0%)	63(12.2%)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240(19.8)	479(39.6)	328(27.1)	164(13.5)	1211
		19.8	59.4	86.5	100.0	

<부록표 12-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96(30.8%)	207(32.5%)	128(20.1%)	105(16.5%)	.198
	여자	165(28.7%)	160(27.9%)	162(28.2%)	87(15.2%)	
교급	중학교	187(31.0%)	159(26.3%)	157(26.0%)	101(16.7%)	.425
	고등학교	174(28.7%)	208(34.3%)	133(21.9%)	91(15.0%)	
계열	인문고	107(30.7%)	126(36.1%)	61(17.5%)	55(15.8%)	.169
	실업고	67(26.1%)	82(31.9%)	72(28.0%)	36(14.0%)	
지역	대도시	180(27.0%)	205(30.8%)	172(25.8%)	109(16.4%)	.046
	대도시 외	173(33.6%)	151(29.3%)	112(21.7%)	79(15.3%)	
전체빈도(비율) 누적비율		361(29.8)	367(30.3)	290(24.0)	192(15.9)	1210
		29.8	60.2	84.1	100.0	

<부록표 12-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22(34.9%)	183(28.7%)	140(22.0%)	92(14.4%)	.033
	여자	156(27.1%)	187(32.5%)	144(25.0%)	88(15.3%)	
교급	중학교	190(31.5%)	175(29.0%)	158(26.2%)	81(13.4%)	.840
	고등학교	188(30.9%)	195(32.1%)	126(20.7%)	99(16.3%)	
계열	인문고	122(34.8%)	112(31.9%)	57(16.2%)	60(17.1%)	.068
	실업고	66(25.7%)	83(32.3%)	69(26.8%)	39(15.2%)	
지역	대도시	195(29.2%)	201(30.1%)	175(26.2%)	96(14.4%)	.183
	대도시 외	176(34.1%)	157(30.4%)	101(19.6%)	82(15.9%)	
전체빈도(비율)		378(31.2)	370(30.5)	284(23.4)	180(14.9)	1212
누적비율		31.2	61.7	85.1	100.0	

<부록표 12-8>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84(28.9%)	247(38.8%)	131(20.6%)	74(11.6%)	.001
	여자	131(22.3%)	206(35.8%)	157(27.3%)	81(14.1%)	
교급	중학교	171(28.4%)	220(36.5%)	132(21.9%)	80(13.3%)	.217
	고등학교	144(23.7%)	233(38.3%)	158(25.7%)	75(12.3%)	
계열	인문고	87(24.8%)	142(40.5%)	76(21.7%)	46(13.1%)	.283
	실업고	57(22.2%)	91(35.4%)	80(31.1%)	29(11.3%)	
지역	대도시	176(26.4%)	243(36.5%)	165(24.9%)	81(12.2%)	.639
	대도시 외	131(25.4%)	196(38.0%)	117(22.7%)	72(14.0%)	
전체빈도(비율)		315(26.0)	453(37.4)	288(23.8)	155(12.8)	1211
누적비율		26.0	63.4	87.2	100.0	

<부록표 12-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86(29.2%)	241(37.9%)	145(22.8%)	64(10.1%)	.020
	여자	125(21.7%)	236(41.0%)	155(27.1%)	58(10.1%)	
교급	중학교	167(27.7%)	235(38.0%)	125(20.7%)	76(12.6%)	.593
	고등학교	144(23.7%)	242(39.8%)	176(28.9%)	46(7.6%)	
계열	인문고	94(26.8%)	138(39.3%)	93(26.5%)	26(7.4%)	.057
	실업고	50(19.5%)	104(40.5%)	83(32.3%)	20(7.8%)	
지역	대도시	176(26.4%)	267(40.1%)	160(24.0%)	63(9.5%)	.272
	대도시 외	130(25.2%)	197(38.2%)	135(26.2%)	54(10.5%)	
전체빈도(비율)		311(25.7)	477(39.4)	301(24.9)	122(10.1)	1211
누적비율		25.7	65.1	89.9	100.0	

<부록표 12-10> 인성교육의 확대(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89(29.7%)	253(39.8%)	133(20.9%)	61(9.6%)	.166
	여자	139(24.2%)	248(43.1%)	139(24.2%)	49(8.5%)	
교급	중학교	173(28.7%)	229(38.0%)	135(22.4%)	66(10.9%)	.525
	고등학교	155(25.5%)	272(44.7%)	137(22.5%)	44(7.2%)	
계열	인문고	96(27.4%)	162(46.2%)	69(19.7%)	24(6.8%)	.067
	실업고	59(23.0%)	110(42.8%)	68(26.5%)	20(7.8%)	
지역	대도시	178(26.7%)	274(41.1%)	160(24.0%)	54(8.1%)	.705
	대도시 외	140(27.1%)	214(41.5%)	107(20.7%)	55(10.7%)	
전체빈도(비율)		328(27.1)	501(41.4)	272(22.5)	110(9.1)	1211
누적비율		27.1	68.5	90.9	100.0	

<부록표 12-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05(32.2%)	224(35.2%)	125(19.7%)	82(12.9%)	.816
	여자	199(34.6%)	175(30.4%)	123(21.4%)	78(13.6%)	
교급	중학교	209(34.7%)	186(30.8%)	118(19.6%)	90(14.9%)	.772
	고등학교	195(32.1%)	213(35.0%)	130(21.4%)	70(11.5%)	
계열	인문고	113(32.2%)	134(38.2%)	67(19.1%)	37(10.5%)	.205
	실업고	82(31.9%)	79(30.7%)	63(24.5%)	33(12.8%)	
지역	대도시	231(34.7%)	193(29.0%)	152(22.8%)	50(13.5%)	.046
	대도시 외	162(31.4%)	196(38.0%)	92(17.8%)	86(12.8%)	
전체빈도(비율)		404(33.4)	399(32.9)	248(20.5)	160(13.2)	1211
누적비율		33.4	66.3	86.8	100.0	

<부록표 12-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77(27.8%)	228(35.8%)	149(23.4%)	82(12.9%)	.052
	여자	139(24.2%)	190(34.4%)	154(26.8%)	84(14.5%)	
교급	중학교	172(28.5%)	198(32.8%)	140(23.2%)	83(15.4%)	.683
	고등학교	144(23.7%)	228(37.5%)	163(26.8%)	73(12.0%)	
계열	인문고	87(24.8%)	139(39.6%)	86(24.5%)	39(11.1%)	.117
	실업고	57(22.2%)	89(34.6%)	77(30.0%)	34(13.2%)	
지역	대도시	181(27.2%)	214(32.1%)	170(25.5%)	101(15.2%)	.439
	대도시 외	130(25.2%)	197(38.2%)	127(24.6%)	62(12.0%)	
전체빈도(비율)		316(26.1)	426(35.2)	303(25.0)	166(13.7)	1211
누적비율		26.1	61.3	86.3	100.0	

<부록표 12-13>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39(37.6%)	225(35.4%)	111(17.5%)	61(9.6%)	.132
	여자	188(32.7%)	214(37.2%)	119(20.7%)	54(9.4%)	
교급	중학교	229(38.0%)	204(33.8%)	104(17.2%)	66(10.9%)	.495
	고등학교	198(32.6%)	235(38.7%)	126(20.7%)	49(8.1%)	
계열	인문고	119(33.9%)	141(40.2%)	62(17.7%)	29(8.3%)	.214
	실업고	79(30.7%)	94(36.6%)	64(24.9%)	20(7.8%)	
지역	대도시	233(35.0%)	232(34.8%)	141(21.2%)	60(9.0%)	.571
	대도시 외	186(36.0%)	194(37.6%)	84(16.3%)	52(10.1%)	
전체빈도(비율)		427(35.3)	439(36.3)	230(19.0)	115(9.5)	1211
누적비율		35.3	71.5	90.5	100.0	

<부록표 12-14>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에 배포(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45(22.8%)	195(30.7%)	201(31.6%)	95(14.9%)	.004
	여자	83(14.4%)	189(32.9%)	213(37.0%)	90(15.7%)	
교급	중학교	141(23.4%)	183(30.3%)	186(30.8%)	93(15.4%)	.004
	고등학교	87(14.3%)	201(33.1%)	228(37.5%)	92(15.1%)	
계열	인문고	42(12.0%)	119(33.9%)	133(37.9%)	57(16.2%)	.119
	실업고	45(17.5%)	82(31.9%)	95(37.0%)	35(13.6%)	
지역	대도시	134(20.1%)	218(32.7%)	223(33.5%)	91(13.7%)	.025
	대도시 외	90(17.4%)	155(30.0%)	180(34.9%)	91(17.6%)	
전체빈도(비율)		228(18.8)	384(31.7)	414(34.2)	185(15.3)	1211
누적비율		18.8	50.5	84.7	100.0	

<부록표 12-1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보급(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64(25.8%)	181(28.5%)	201(31.6%)	90(14.2%)	.001
	여자	82(14.3%)	220(38.3%)	190(33.0%)	83(14.4%)	
교급	중학교	145(24.0%)	201(33.3%)	178(29.5%)	79(13.1%)	.001
	고등학교	101(16.6%)	200(32.9%)	213(35.0%)	94(15.5%)	
계열	인문고	57(16.2%)	103(29.3%)	133(37.9%)	58(16.5%)	.102
	실업고	44(17.1%)	97(37.7%)	80(31.1%)	36(14.0%)	
지역	대도시	139(20.9%)	234(35.1%)	209(31.4%)	84(12.6%)	.047
	대도시 외	102(19.8%)	158(30.6%)	171(33.1%)	85(16.5%)	
전체빈도(비율)		246(20.3)	401(33.1)	391(32.3)	173(14.3)	1211
누적비율		20.3	53.4	85.7	100.0	

<부록표 12-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반영(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68(26.4%)	198(31.1%)	185(29.1%)	85(13.4%)	.137
	여자	104(18.1%)	221(38.5%)	182(31.7%)	67(11.7%)	
교급	중학교	166(27.6%)	201(33.4%)	166(27.6%)	69(11.5%)	.000
	고등학교	106(17.4%)	218(35.9%)	201(33.1%)	83(13.7%)	
계열	인문고	52(14.8%)	124(35.3%)	121(34.5%)	54(15.4%)	.020
	실업고	54(21.0%)	94(36.6%)	80(31.1%)	29(11.3%)	
지역	대도시	160(24.1%)	230(34.6%)	207(31.1%)	68(10.2%)	.038
	대도시 외	109(21.1%)	178(34.5%)	150(29.1%)	79(15.3%)	
전체빈도(비율)		272(22.5)	419(34.6)	367(30.3)	152(12.6)	1210
누적비율		22.5	57.1	87.4	100.0	

<부록표 12-17>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부여(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57(24.7%)	163(25.6%)	189(29.7%)	127(20.0%)	.525
	여자	118(20.5%)	158(27.5%)	204(35.5%)	95(16.5%)	
교급	중학교	166(27.5%)	159(26.4%)	173(28.7%)	105(17.4%)	.000
	고등학교	109(17.9%)	162(26.6%)	220(36.2%)	117(19.2%)	
계열	인문고	55(15.7%)	96(27.4%)	121(34.5%)	79(22.5%)	.040
	실업고	54(21.0%)	66(25.7%)	99(38.5%)	38(14.8%)	
지역	대도시	167(25.1%)	165(24.8%)	217(32.6%)	117(17.6%)	.062
	대도시 외	100(19.4%)	145(28.1%)	167(32.4%)	104(20.2%)	
전체빈도(비율)		275(22.7)	321(26.5)	393(32.5)	222(18.3)	1211
누적비율		22.7	49.2	81.7	100.0	

<부록표 12-18>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 만들기(권리신장 방안)

변 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13(33.5%)	232(36.5%)	118(18.6%)	73(11.5%)	.275
	여자	155(27.0%)	244(42.4%)	120(20.9%)	56(9.7%)	
교급	중학교	216(35.8%)	203(33.7%)	113(18.7%)	71(11.8%)	.108
	고등학교	152(25.0%)	273(44.9%)	125(20.6%)	58(9.5%)	
계열	인문고	86(24.5%)	164(46.7%)	67(19.1%)	34(9.7%)	.829
	실업고	66(25.7%)	109(42.4%)	58(22.6%)	24(9.3%)	
지역	대도시	204(30.6%)	252(37.8%)	141(21.2%)	69(10.4%)	.949
	대도시 외	156(30.2%)	208(40.3%)	95(18.4%)	57(11.0%)	
전체빈도(비율)		368(30.4)	476(39.3)	238(19.7)	129(10.7)	1211
누적비율		30.4	69.7	89.3	100.0	

<부록표 12-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190(29.9%)	256(40.3%)	130(20.4%)	60(9.4%)	.005
	여자	126(21.9%)	248(43.1%)	139(24.2%)	62(10.8%)	
교급	중학교	179(29.7%)	223(37.0%)	135(22.4%)	66(10.9%)	.450
	고등학교	137(22.5%)	281(46.2%)	134(22.0%)	56(9.2%)	
계열	인문고	83(23.6%)	171(48.7%)	65(18.5%)	32(9.1%)	.116
	실업고	54(21.0%)	110(42.8%)	69(26.8%)	24(9.3%)	
지역	대도시	182(27.3%)	261(39.2%)	158(23.7%)	55(9.8%)	.966
	대도시 외	126(24.8%)	233(45.2%)	102(19.3%)	53(10.3%)	
전체빈도(비율)		316(26.1)	504(41.6)	269(22.2)	122(10.1)	1211
누적비율		26.1	67.7	89.9	100.0	

<부록표 12-20> 청소년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07(32.6%)	236(37.2%)	140(22.0%)	52(8.2%)	.002
	여자	131(22.8%)	249(43.3%)	134(23.3%)	61(10.6%)	
교급	중학교	192(31.9%)	215(35.7%)	133(22.1%)	62(10.3%)	.274
	고등학교	146(24.0%)	270(44.4%)	141(23.2%)	51(8.4%)	
계열	인문고	86(24.5%)	161(45.9%)	73(20.8%)	31(8.8%)	.517
	실업고	60(23.3%)	109(42.4%)	68(26.5%)	20(7.8%)	
지역	대도시	198(29.7%)	247(37.1%)	162(24.3%)	59(8.9%)	.575
	대도시 외	135(26.2%)	222(43.1%)	105(20.4%)	53(10.3%)	
전체빈도(비율)		336(27.9)	486(40.1)	274(22.6)	113(9.3)	1210
누적비율		27.9	68.0	90.7	100.0	

<부록표 12-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권리신장 방안)

변인		매우 효과있음	효과있음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유의도 (P)
성별	남자	243(38.2%)	217(34.1%)	112(17.6%)	64(10.1%)	.217
	여자	182(31.7%)	231(40.2%)	109(19.0%)	53(9.2%)	
교급	중학교	233(38.6%)	189(31.2%)	118(19.6%)	64(10.6%)	.813
	고등학교	192(31.6%)	260(42.6%)	103(16.9%)	53(8.7%)	
계열	인문고	118(33.6%)	155(43.2%)	48(13.7%)	30(8.5%)	.075
	실업고	74(28.8%)	105(40.9%)	55(21.4%)	23(8.9%)	
지역	대도시	229(34.4%)	225(33.8%)	149(22.4%)	63(9.5%)	.119
	대도시 외	185(35.9%)	212(41.1%)	66(12.8%)	53(10.3%)	
전체빈도(비율)		425(35.1)	448(37.0)	221(18.2)	117(9.7)	1211
누적비율		35.1	72.1	90.3	100.0	